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17. 7. .

특 허 청  
(디자인심사정책과)

법제처 심사 전

## 1. 개정이유

우선권 증명서류를 전자적으로 제출 가능하도록 디자인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4686호, 2017.9.22. 시행)됨에 따라 디자인 우선권 증명서류를 서류뿐만 아니라 전자적으로 교환 및 확인할 수 있도록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인이 제출하는 서류에 위임장을 첨부하면 대리인 선임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대상 서류를 확대하며, 국제등록명의인이 본인의 국제디자인등록출원 및 등록에 관한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특허고객번호의 기재 의무를 완화하려는 것임. 또한, 정부 상징이 새롭게 만들어져 부처별 상징도 정부 상징을 사용하여야 함에 따라 디자인등록증에 있는 변경되기 전의 정부 상징과 특허청 상징, 기타 배경 도안을 삭제하려는 것이며, 수리되기 전인 출원서류 중 출원인의 요청에 의한 서류의 반환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가. 디자인 우선권 증명서류 제출 방법 개정(안 제47조)

디자인보호법 제51조 제4항에서 규정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국가’에 대해 ‘특허청과 외국의 디자인업무를 담당하는 행정기관 간에 우선권증명서류를 전자적 매체에 의하여 교환할 수 있는 체제가 구축된 국가로서 특허청장이 고시하는 국가’로 정의하고, 같은 항 제2호에서 규정한 ‘그 밖에 출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해 ‘세계지식재산기구의 우선권서류를 전자적 매체에 의하여 교환할 수

있는 체제에 접근하도록 하기 위하여 최초로 출원한 국가에서 부여하는 고유번호(접근코드)'로 규정하며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접근코드를 적음으로써 우선권주장 증명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같음한다고 규정

나. 접근코드 신청서식 명시(안 제95조 제1항 제2호)

디자인보호법 제51조 제4항 제2호에서 규정한 '그 밖에 출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취득할 수 있도록 접근코드 신청서식 명시

다. 대리인 선임신고 제외 대상 서류 확대(안 제7조 제2항 제2호)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인이 제출하는 서류 중 '서류제출서'로 제출하는 우선권증명서류, 우선권증명서류번역문, 신규성상실의 예외적용 대상 증명서류에 대해 대리인 선임 없이 위임장만 첨부하도록 규정

라. 특허고객번호 의무기재 완화(안 제14조 제1항)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출원인 정보는 국제등록부와 연동되어 있으므로 국제등록명의인이 본인의 국제디자인등록출원 및 등록에 관한 절차를 진행할 때는 특허고객번호가 필요하지 않음. 따라서 이 경우, 특허고객번호를 기재하지 않아도 되도록 함

마. 서류의 반환 근거 규정 신설(안 제24조의2)

수리되기 전인 출원서류 중 출원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서류를 반환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신설

바. 디자인등록증 서식 개정

국문과 영문으로 된 디자인등록증 및 관련디자인등록증에 있는 옛날 정부 및 특허청 상징, 배경 도안 등 삭제

사. 비변리사의 대리행위 금지에 따른 서식 기재요령 정비

비변리사의 임의대리행위 금지 관련 사항을 반영하여 서식의 기재요령에서 변리사가 아닌 자의 임의대리 관련 내용 삭제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7. 00. 00. ~ 0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2호 중 “보정 또는 지정기간연장신청을”를 “보정, 지정기간 연장신청, 우선권증명서류, 우선권증명서류번역문 또는 신규성상실의 예외적용대상 증명서류를 제출”로, “보정서 또는”을 “보정서,”로 하고 “연장신청서”를 “연장신청서 또는 같은 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의 서류 제출서”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호, 제4호, 제6호 및 제8호의 경우 디자인보호법 제179조에 따라 본인의 국제디자인등록출원 및 등록에 관한 절차를 진행하려는 국제등록명의인에 대해서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출원서류등의 반환) ①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이미 제출되었으나 수리되기 전인 출원서류등 중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의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한 자의 신청이 있으면 그 서류를 반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서류의 반환을 신청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반환신청서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제47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5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국가"란 특허청과 외국의 디자인업무를 담당하는 행정기관간에 우선권증명서류를 전자적 매체에 의하여 교환할 수 있는 체제가 구축된 국가로서 특허청장이 고시하는 국가를 말한다.

제47조제4항(중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한다."를 "하며, 이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의 서류제출서에 따른다."로 한다.

제47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국어번역문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우선권주장을 무효로 할 수 있다.

⑥ 법 제51조제4항제2호에서 "그 밖에 출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세계지식재산기구(「세계지식재산기구 설립협약」 제1조에 따라 설립된 세계지식재산기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우선권증명서류를 전자적 매체에 의하여 교환할 수 있는 체제에 접근하도록 하기 위하여 최초로 출원한 국가에서 부여하는 고유번호(이하 "접근코드"라 한다)를 말한다.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51조제4항제2호에 따른 서면의 제출은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최초로 출원한 국가의 디자인등록출원의 출원번호 및 접근코드를 적음으로써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의 서류제출서를 갈음할 수 있다.

제63조 중 “납부할 때에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포기서와 함께”를 “납부할 때에”로 한다.

제95조제1항제2호 중 “신청”을 “신청하거나 그 증명서를 특허청장이 세계지식재산기구에 전자적 매체에 의하여 송달(세계지식재산기구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접근코드의 부여 신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내지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의2서식 내지 별지 제13호의5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내지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7호의2서식 내지 별지 제17호의5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2017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3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의견(답변, 소명)서

(앞쪽)

- 【서류 구분】  거절이유 등 통지에 따른 의견  직권보정에 대한 의견
- 재심사청구에 따른 의견  심판사건 답변  심판사건 의견
-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답변
-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의견
-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재답변
- 반려이유통지에 따른 소명

### 【제출인】

【성명(명칭)】

【특허고객번호】

【사건과의 관계】

###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번호】

( 【포괄위임등록번호】 )

### 【사건의 표시】

( 【출원번호(등록번호, 국제등록번호, 특허청참조번호, 이의신청번호)】 )

( 【디자인의 일련번호】 )

( 【심판번호】 )

( 【직권보정에 대한 의견】  전부 불수용  일부 불수용 )

( 【일부 불수용의 표시】 직권보정 사항 중 ( )번 사항 )

( 【제출원인이 된 서류의 발송번호】 )

【의견(답변, 소명)내용】

( 【증거방법】 )

위와 같이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 심판장)에게 제출합니다.

제출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 (기재방법 제8호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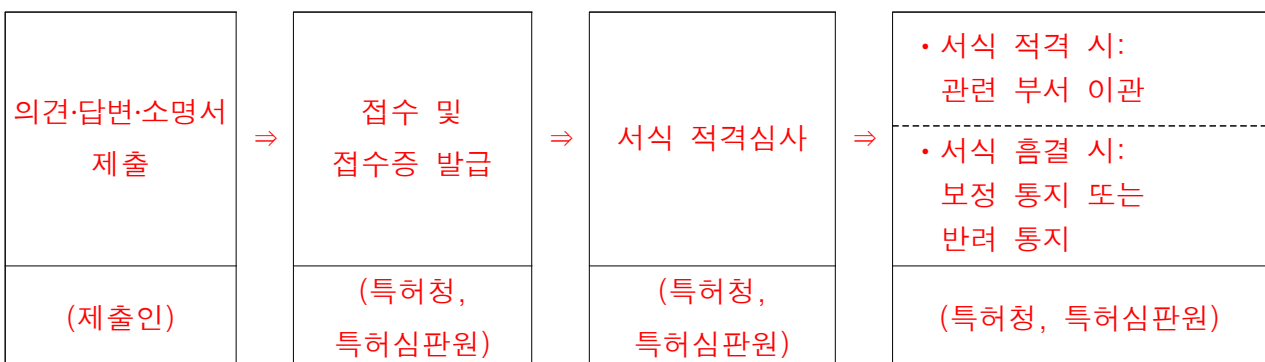
210mm×297mm(백상지 80g/m<sup>2</sup>)



## 1. 서류 구분 및 관련 규정

서류 구분	내용	관련 규정
거절이유 등 통지에 따른 의견	심사절차 또는 심판절차에서 의견제출 통지를 받고서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59조
저작권보정에 대한 의견	심사관이 디자인등록결정 등본의 송달과 함께 통지한 저작권보정 사항에 대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	「디자인보호법」 제66조
재심사청구에 따른 의견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등본을 송달받고 재심사를 청구하면서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디자인보호법」 제64조
심판사건 답변	심판청구서 부분을 송달받고서 피청구인이 이에 대한 답변을 제출하는 경우	「디자인보호법」 제134조
심판사건 의견	참가신청에 대해 당사자 및 다른 참가인이 의견을 제출하거나, 심판절차에서 직권심리 결과를 통지받고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디자인보호법」 제144조 및 제147조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답변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서 부분을 송달받은 권리자가 이에 대한 답변을 제출하는 경우	「디자인보호법」 제68조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의견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답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거나,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절차에서 의견제출통지를 받고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디자인보호법」 제68조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재답변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절차에서 이의신청의견에 대한 재답변을 제출하는 경우	「디자인보호법」 제68조
반려이유통지에 따른 소명	부적합한 서류로 본다는 반려이유통지를 받고 소명하는 경우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24조

## 2. 처리절차



## ※ 기재방법

### 1. 【서류 구분】란

서류 구분 중 하나를 선택하여 □ 안에 표시(예: ☑)합니다.

### 2. 【제출인】란

가. 특허고객번호가 있는 경우

- 1) 【성명(명칭)】란에는 특허고객번호부여신청서에 적은 한글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습니다.
- 2) 제출인이 「디자인보호법」 제179조에 따른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이하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이라 한다) 출원인인 경우에는 【성명(명칭)】란에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 협정」 제1조(viii)에 따른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것과 같은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습니다.
- 3) 제출인이 국제디자인등록출원과 관련된 심판사건의 제출인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성명(명칭)】란은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외래어표기법에 따라 한글로 음역하여 성과 이름 사이에 한 칸 띄어쓰기하여 적고, 【성명(명칭)】란의 다음 줄에 【성명(명칭)의 영문 표기】란을 만들어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 협정」 제1조(viii)에 따른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것과 같은 문자로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습니다.

[예] 【제출인】

【성명(명칭)】 케네디 존 에프

【성명(명칭)의 영문 표기】 KENNEDY John F.

【특허고객번호】 0-0000-000000-0

- 4) 【특허고객번호】란에는 특허청에서 부여한 특허고객번호를 적습니다.

나.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

- 1) 【제출인】란의 다음 행에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특허고객번호부여신청서)의 기재요령 제1호를 참조하여 제출인의 【성명(명칭)의 국문표기】 및 【성명(명칭)의 영문표기】 등 필요한 난을 만들어 적습니다.
- 2) 제출인은 직접 서명하거나 인감을 날인해야 하며, 그 방법은 원칙적으로 【첨부서류】란이 있는 쪽의 다음 쪽에 【제출인 ○○○의 인감(서명)】란을 만들고 그 아래에 가로 4cm × 세로 4cm의 인감 날인란(서명란)을 만들어 직접 서명하거나 제출인의 인감을 선명하게 날인합니다. 2인 이상의 제출인이 있는 경우에는 제출인의 수대로 【제출인 ○○○의 인감(서명)】란을 만들어 모든 제출인이 직접 서명하거나 인감을 날인합니다.

다.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출원인인 경우

【특허고객번호】란을 기재하거나 【주소】란을 만들어 기재합니다. 【주소】란에는 헤이그 협정 제1조(viii)에 따른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것과 동일한 주소를 적으며, 【주소】란을 기재할 경우 【특허고객번호】란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대리인】항목 중 【포괄위임등록번호】를 기재하는 경우에는 【특허고객번호】란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라. 공통

- 1) 【사건과의 관계】란은 "출원인", "등록권리자", "제3자", "청구인", "피청구인", "이의신청인" 등과 같이 제출인과 사건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적습니다.
- 2) ~~변리사 또는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 외의 임의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거나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제출인】란의 다음 줄에 【법정대리인~~등~~】란을 만들어 법정대리인~~등~~의 【성명】 및 【특허고객번호】란을 적고,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이 서식에 첨부합니다.

[예] 【제출인】  
      【법정대리인~~등~~】  
      【성명】  
      【특허고객번호】

### 3. 【대리인】란

가.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리인번호를 적습니다. 대리인이 특허법인 또는 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대리인번호】란의 다음 줄에 【지정된 변리사】란을 만들어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모두 적습니다.

[예] 【대리인】  
      【성명(명칭)】 특허법인 ○○○○  
      【대리인번호】 (특허법인의 대리인번호)  
      【지정된 변리사】 변리사 ○○○, 변리사 ○○○

나. 포괄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대리인번호】란의 다음 줄에 【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포괄위임등록번호를 적고, 대리인이 2인 이상의 위임자와 포괄위임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위임자의 수대로 【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모두 적습니다.

[예]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다.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이 위임자 모두를 대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대리인번호】란의 다음 줄에 【특기사항】란을 만들어 적습니다.

[예] 【대리인번호】  
      【특기사항】 제출인 ○○○의 대리인

라.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인 경우에는 【첨부서류】란에 "위임장"이라 적고, 위임장이 이 서식에 첨부하며, 위임장의 기재사항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위임장)을 참고하여 작성합니다.

마. 대리인이 국제디자인등록출원 또는 국제출원과 관련하여 반려이유통지를 받고 소명하려는 경우에는 【대리인】란에 【성명의 영문 표기】란과 【대리인번호】란을 각각 만들어 적습니다. 대리인이 특허법인 또는 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성명의 영문표기】란을 【명칭의 영문표기】란으로 바꿔 특허법인 또는 특허법인(유한)의 명칭을 적습니다.

### 4. 【사건의 표시】란

제출인이 밝히려는 절차에 따라 【출원번호(등록번호, 국제등록번호, 특허청참조번호, 이의신청번호)】란 또는 【심판번호】란에 다음 기재의 예와 같은 형식으로 해당 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복수디자인등록출원(2014년 7월 1일 이후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것만 해당합니다)의 경우에는 【출원번호】의 다음 행에 【디자인의 일련번호】란을 만들어 해당하는 디자인의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절차별 해당 번호 기재의 예]

절차별	해당 번호	기재의 예
출원에 관한 절차	【출원번호】 권리 구분(2자리)-연도(4자리)-일련번호(7자리)	30-2010-1234567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관한 절차	【이의신청번호】 권리 구분(2자리)-연도(4자리)-일련번호(6자리)	30-2010-123456
등록에 관한 절차	【디자인등록번호】 권리 구분(2자리)-일련번호(7자리) ※복수디자인등록의 경우에는 권리 구분(2자리)-일련번호(7자리)-일련번호(4자리)	30-1234567 ※복수디자인등록의 경우에는 30-1234567-0001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한 절차	【국제등록번호】 DM/일련번호(6자리) 또는 일련번호(6자리)영문자(1자리)	DM/123456 또는 DM/123456A
국제출원에 관한 절차	【특허청참조번호】 KR-연도(4자리)-일련번호(7자리)	KR-2014-3123456
심판에 관한 절차	【심판번호】 연도(4자리)-사건 구분-일련번호(6자리)	2010-당-123456

5. 【제출원인이 된 서류의 발송번호】란

제출원인이 된 통지서의 발송번호를 적습니다.

6. 【직권보정에 대한 의견】란

가. 【서류 구분】란의 선택사항 중 직권보정에 대한 의견을 선택한 경우에만 이 난을 적습니다.

나. 직권보정의 전부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에는 전부 불수용 항목을 선택하여  안에 표시(예: )합니다.

다. 직권보정의 일부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에는 일부 불수용 항목을 선택하여  안에 표시(예: )하고, 직권보정된 사항들 중 받아들일 수 없는 사항의 번호를 일부 불수용의 표시 항목에 적습니다.

7. 【의견(답변, 소명)내용】란

가. 의견(답변, 소명)의 이유 및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고, 이 난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와 같음"이라고 적고 별지를 첨부합니다.

나. 【증거방법】란에는 증거가 있을 때에만 적고 필요에 따라 별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증거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첨부서류】란에 증거내용과 그 부수를 적습니다.

8. 【첨부서류】란

가. 이 서식에 첨부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거절이유 등 통지에 따른 의견, 심판사건의견, 이의신청의견, 이의신청 재답변의 경우에는 의견 또는 재답변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2) 심판사건답변, 이의답변의 경우에는 답변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3) 반려이유통지에 따른 소명의 경우에는 소명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4)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기재방법 제2호, 제3호, 제6호 및 제7호 참조)

나. 【첨부서류】란

- 1) 서식에 첨부할 서류명과 부수를 다음 예와 같이 적되, 서식과 함께 제출하지 않는 첨부서류는 적을 수 없습니다.

[예] 【첨부서류】 위임장 1통

- 2) 첨부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42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라 누구든지 서류로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에 해당하는 서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특허청장이 확인해야 하는 정보로서, 제출인은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서류의 명칭, 부수 및 그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적습니다.

[예]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통

[상호: ○○○, 법인등록번호: 000000-0000000]

- 3) 첨부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42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라 누구든지 서류로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 외의 행정정보(주민등록표 등본·초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인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특허청장이 확인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따라서 특허청장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고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서류의 명칭, 부수 및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적으면 관련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허청장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면 제출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예 1]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1통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예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예 3]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1통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보호번호: 000-000000]

다. 서류의 원용

- 1) 동시에 진행하는 둘 이상의 디자인에 관한 절차에서 제출하는 증명서(「디자인보호법」 제8조, 제36조제2항, 제51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명서만 해당합니다)가 같은 것일 경우에는 그 중 한 건에만 증명서의 원본을 제출하고, 다른 건에는 다음 예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적고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니다.

[예] 위임장 1통 [같은 날짜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 디자인등록출원서

【출원번호】 30-2010-1234567

2) 이미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한 증명서(「디자인보호법」 제8조, 제36조제2항, 제51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명서만 해당합니다)와 같은 내용의 증명서를 다시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적고 그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 위임장 1통 [아래의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 심판청구서

【심판번호】 2010-당-123456

라. 첨부서류를 전자적 이미지파일 형식으로 변환(스캐닝)하여 제출하는 경우의 유의사항

1) 첨부서류로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파일 형식은 해상도 300dpi부터 400dpi까지(300dpi 권장)의 흑백 TIFF(Tagged Image File Format)파일이어야 합니다.

2)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흑백 또는 컬러 이미지로 제출 가능하며,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파일 형식은 해상도 300dpi부터 400dpi까지(300dpi 권장)의 JPEG(Joint Photographic Experts Group)파일이어야 합니다.

마. 첨부서류를 PDF(Portable Document Format)파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바. 도면을 3차원 모델링(Modeling)파일 형식으로 제출할 경우에는 3DS(3D Studio), DWG(Drawing), DWF(Design Web Format), IGES(Initial Graphic Exchange Specification) 또는 3DM(3 Dimensional Modeling) 파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9. 작성 시 유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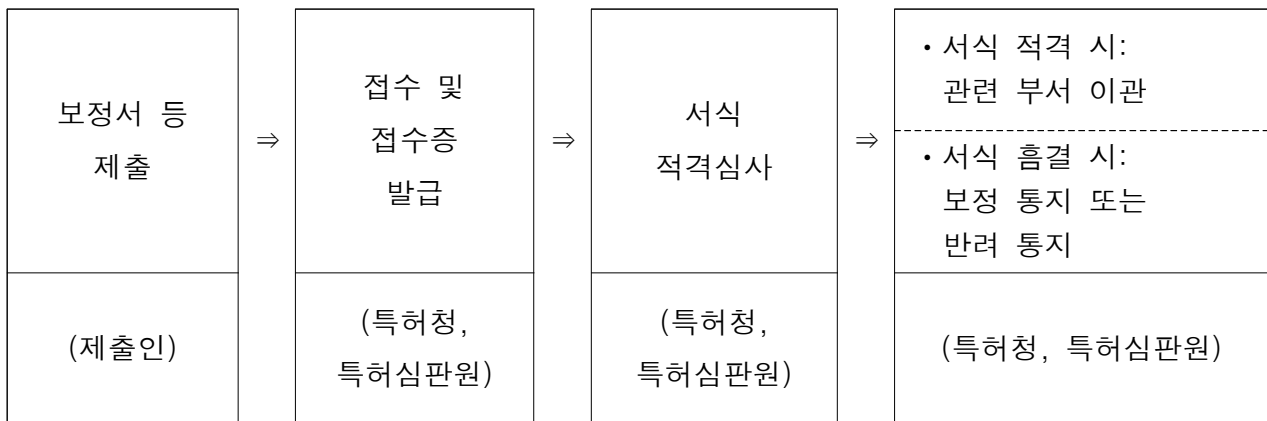
서식은 제출인(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기명을 한 후에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하며, 2인 이상의 제출인(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 기명을 한 후에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합니다. 서명 또는 날인 시의 인감은 출원인등록[대리인이 변리사인 경우에는 변리사등록, 대리인이 특허법인 또는 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법인등록] 시 사용한 것과 같은 서명 또는 인감을 사용하며, 특허고객번호 정보변경(경정), 정정신고서에 따라 서명 또는 인감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서명 또는 인감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1. 보정 구분 및 관련 규정

보정 구분	내용	관련 규정
출원서 등 보정	출원서 또는 그 중간서류의 서지(書誌) 사항을 보정하는 경우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26조
도면 등 보정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첨부한 도면, 도면의 기재사항, 사진 또는 견본을 보정하는 경우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26조
이의신청서 등 보정	이의신청서 또는 그 중간서류의 서지 사항을 보정하는 경우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59조
심판청구서 등 보정	심판청구서 또는 그 중간서류의 서지 사항을 보정하는 경우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26조
심판청구서 등 보충	보충요구서를 통지받고 심판청구서 또는 그 중간서류의 서지사항을 보충하는 경우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26조
절차보완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보정명령을 받고서 출원을 보완하는 경우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37조

### 2. 처리절차



### ※ 기재방법

#### 1. 【보정 구분】란

보정 구분 중 하나를 선택하여  안에 표시(예: )합니다.

#### 2. 【제출처】란

가. 제출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안에 표시(예: )합니다.

나. 심판청구와 관련된 보정인 경우에는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안에 표시(예: )합니다.

다. 재심사청구와 관련된 보정인 경우에는 특허청장의  안에 표시(예: )합니다.

### 3. 【제출인】란

가. 특허고객번호가 있는 경우

- 1) 【성명(명칭)】란에는 특허고객번호부여신청서에 적은 한글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습니다.
- 2) 제출인이 「디자인보호법」 제179조에 따른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이하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이라 한다) 출원인인 경우에는 【성명(명칭)】란에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 협정」 제1조(viii)에 따른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것과 같은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습니다.
- 3) 제출인이 국제디자인등록출원과 관련된 심판사건의 제출인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성명(명칭)】란은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외래어표기법에 따라 한글로 음역하여 성과 이름 사이에 한 칸 띄어쓰기하여 적고, 【성명(명칭)】란의 다음 줄에 【성명(명칭)의 영문 표기】란을 만들어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 협정」 제1조(viii)에 따른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것과 같은 문자로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습니다.

[예] 【제출인】

【성명(명칭)】 케네디 존 에프

【성명(명칭)의 영문 표기】 KENNEDY John F.

【특허고객번호】 0-0000-000000-0

- 4) 【특허고객번호】란에는 특허청에서 부여한 특허고객번호를 적습니다.

나.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

- 1) 【제출인】란의 다음 행에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특허고객번호 부여신청서)의 기재요령 제1호를 참조하여 제출인의 【성명(명칭)의 국문표기】 및 【성명(명칭)의 영문표기】 등 필요한 난을 만들어 적습니다.
- 2) 제출인은 직접 서명하거나 인감을 날인해야 하며, 그 방법은 원칙적으로 【첨부서류】란이 있는 쪽의 다음 쪽에 【제출인 ○○○의 인감(서명)】란을 만들고 그 아래에 가로 4cm × 세로 4cm의 인감 날인란(서명란)을 만들어 직접 서명하거나 제출인의 인감을 선명하게 날인합니다. 2인 이상의 제출인이 있는 경우에는 제출인의 수대로 【제출인 ○○○의 인감(서명)】란을 만들어 모든 제출인이 직접 서명하거나 인감을 날인합니다.

다.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출원인인 경우

【특허고객번호】란을 기재하거나 【주소】란을 만들어 기재합니다. 【주소】란에는 헤이그 협정 제1조(viii)에 따른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것과 동일한 주소를 적으며, 【주소】란을 기재할 경우 【특허고객번호】란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대리인】항목 중 【포괄위임등록번호】를 기재하는 경우에는 【특허고객번호】란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라. 공통

- 1) 【사건과의 관계】란은 “출원인”, “등록권리자”, “제3자”, “청구인”, “피청구인”, “이의신청인” 등과 같이 제출인과 사건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적습니다.
- 2) ~~변리사 또는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 외의 임의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거나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

이 **【제출인】** 란의 다음 줄에 **【법정대리인-등】** 란을 만들어 법정대리인-등의 **【성명】** 및 **【특허고객번호】** 를 적고,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예] **【제출인】**

**【법정대리인-등】**

**【성명】**

**【특허고객번호】**

#### 4. **【대리인】** 란

가.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리인번호를 적습니다. 대리인이 특허법인 또는 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대리인번호】** 란의 다음 줄에 **【지정된 변리사】** 란을 만들어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모두 적습니다.

[예] **【대리인】**

**【성명(명칭)】** 특허법인 ○○○○

**【대리인번호】** (특허법인의 대리인번호)

**【지정된 변리사】** 변리사 ○○○, 변리사 ○○○

나. 포괄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대리인번호】** 란의 다음 줄에 **【포괄위임등록번호】** 란을 만들어 포괄위임등록번호를 적고, 대리인이 2인 이상의 위임자와 포괄위임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위임자의 수대로 **【포괄위임등록번호】** 란을 만들어 모두 적습니다.

[예]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다.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이 위임자 모두를 대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대리인번호】** 란의 다음 줄에 **【특기사항】** 란을 만들어 적습니다.

[예] **【대리인번호】**

**【특기사항】** 제출인 ○○○의 대리인

라.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인 경우에는 **【첨부서류】** 란에 “위임장”이라 적고, 위임장이 서식에 첨부하며, 위임장의 기재사항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위임장)을 참고하여 작성합니다.

#### 5. **【사건의 표시】** 란

제출인이 밟으려는 절차에 따라 **【출원번호(국제등록번호, 이의신청번호)】** 란 또는 **【심판번호】** 란에 다음 기재의 예와 같은 형식으로 해당 번호를 적으며, 복수디자인등록출원(2014년 7월 1일 이후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것만 해당합니다)의 경우에는 **【출원번호】** 의 다음 행에 **【디자인의 일련번호】** 란을 만들어 해당하는 디자인의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심판청구서 등 보정에서 보정할 서류가 법정기간연장신청과 관련된 경우에는 **【출원번호】** 란에 해당 출원번호를 적고, **【심판번호】** 란은 적지 않습니다.

[절차별 해당 번호 기재의 예]

절차별	해당 번호	기재의 예
출원에 관한 절차	【출원번호】 권리 구분(2자리)-연도(4자리)-일련번호(7자리)	30-2010-1234567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한 절차	【국제등록번호】 DM/일련번호(6자리) 또는 일련번호(6자리)영문자(1자리)	DM/123456 또는 DM/123456A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관한 절차	【이의신청번호】 권리 구분(2자리)-연도(4자리)-일련번호(6자리)	30-2010-123456
심판에 관한 절차	【심판번호】 연도(4자리)-사건 구분-일련번호(6자리)	2010-당-123456

6. 【제출원인이 된 서류의 접수(발송)번호】란

가. 특허청장 등의 통지에 의한 보정인 경우에는 제출원인이 된 통지서의 발송번호를 적습니다.

나. 통지에 의하지 않고 자진하여 보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보정하려는 서류의 접수번호를 적습니다.

[예] 【제출원인이 된 서류의 접수번호】 1-1-00-1234567-12

다. 재심사청구와 동시에 보정하는 경우에는 디자인등록거절결정서의 발송번호를 적습니다.

7. 【보정(보완, 보충)할 서류】란

보정, 보완 또는 보충하려는 서류의 명칭을 다음 예와 같이 적습니다.

[예 1] 【보정할 서류】 디자인등록출원서

[예 2] 【보충할 서류】 심판청구서

8. 【보정(보완, 보충)할 사항】란

가. 하나의 보정서로 도면, 출원서, 그 밖의 서류의 서지(書誌)사항의 보정을 동시에 할 수 없습니다. 도면의 보정과 서지사항의 보정을 동시에 하려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보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출원서 등 보정, 절차보완, 이의신청서 등 보정, 심판청구서 등 보정(보충)의 경우

1) 【보정(보완, 보충)대상 항목】란, 【보정(보완, 보충)방법】란 및 【보정(보완, 보충)내용】란에 각각 해당 내용을 적고, 보정내용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식별 항목을 만들어 모두 적습니다.

[예] 【보정할 사항】

【보정대상 항목】 첨부서류

【보정방법】 제출

【보정내용】

【첨부서류】 위임장 1통

【보정할 사항】

【보정대상 항목】 수수료

【보정방법】 납부

【보정내용】 미납 수수료

- 2) 【보정(보완, 보충)대상 항목】 란에는 보정하려는 식별 항목명을 다음 예와 같이 적습니다. 다만, 대항목에 속하는 소항목(창작자의 【주소】 등) 단위의 보정은 불가능하므로 대상 항목을 대항목 단위로 적습니다.

[예] 【보정대상 항목】 창작자, 우선권 주장, 첨부서류 등

- 3) 【보정(보완, 보충)방법】 란에는 “정정”, “추가”, “제출”, “납부” 등으로 적고, 하나의 식별 항목에 둘 이상의 보정방법을 적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쉼표로 구분하여 각각 적습니다. 여러 개로 구성되는 식별 항목(창작자, 대리인 등) 중 일부내용(대리인 3명 중 1명)을 삭제하는 경우에는 보정방법을 “정정”으로 적습니다.

[예] 【보정방법】 정정, 추가

- 4) 【보정(보완, 보충)내용】 란에는 보정대상 항목에 대하여 보정하려는 내용을 적고, 보정대상 항목이 반복되거나 소항목이 있는 경우(창작자, 우선권 주장 등)에는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식별 항목의 내용을 모두 적습니다. 보정방법이 “정정” 또는 “추가”인 경우 보정하는 부분에 밑줄을 그어 보정내용을 표시하며, 별지로 제출한 내용을 보정할 경우에는 “별지와 같음”이라고 적고 별지를 전문(全文) 보정하여 첨부합니다.

[예] 【보정할 사항】

【보정대상 항목】 창작자

【보정방법】 정정, 추가

【보정내용】

【창작자】

【성명의 국문표기】 홍길동

【성명의 영문표기】 HONG, Gil Dong

【주민등록번호】 720921-1234561

【우편번호】 135-784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논현로 123-1

【창작자】

【성명의 국문표기】 장영실

【성명의 영문표기】 JANG, Young Sil

【주민등록번호】 650123-1234123

【우편번호】 135-784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논현로 123-2

- 5) 출원인 또는 특허고객번호를 부여받은 창작자가 특허고객번호 부여신청서에 작성한 내

용을 보정하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특허고객번호 정보변경(경정), 정정신고서]의 특허고객번호 정보변경(경정)을 이용하여 보정합니다.

- 6) 복수디자인출원 중 일부디자인의 서지사항을 보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보정(보완, 보충)대상 항목】란에 보정하려는 디자인의 일련번호를 적고, 【보정(보완, 보충)내용】란에는 해당 디자인의 서지사항 일부(【단독디자인, 관련디자인 여부】부터 【부분디자인 여부】까지, 부분디자인이 아닌 경우에는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까지)를 보정하여 새로 작성한 내용을 적고, 보정내용이 해당 디자인의 서지사항에 대한 “정정” 또는 “추가”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밑줄을 그어 보정된 내용임을 표시합니다.

[예] 부분디자인인 디자인의 일련번호 M004 디자인의 창작자의 주소를 정정하고 창작자를 1명 추가하며 우선권 주장 출원번호를 정정하는 경우(부분디자인이 아닌 경우에는 “【부분디자인 여부】 부분디자인”을 적지 않거나 “【부분디자인 여부】 부분디자인 아님”이라고 적습니다)

【보정대상 항목】 디자인의 일련번호 M004

【보정방법】 정정, 추가

【보정내용】

【단독디자인, 관련디자인 여부】 단독디자인

【물품류】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피아노

【부분디자인 여부】 부분디자인

【창작자】

【성명의 국문표기】 홍길동

【성명의 영문표기】 HONG, Gil Dong

【주민등록번호】 720921-1234567

【우편번호】 135-784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논현로 123-1

【창작자】

【성명의 국문표기】 장영실

【성명의 영문표기】 JANG, Young Sil

【주민등록번호】 650123-1234568

【우편번호】 135-784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논현로 123-2

【우선권 주장】

【출원국명】 US

【출원종류】 디자인

【출원번호】 2010-123456

【출원일자】 2010. 01. 03.

【증명서류】 첨부

- 7)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을 디자인심사등록출원으로 변경하는 보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 1]과 같이 적고, 디자인심사등록출원을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으로 변경하는 보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 2]와 같이 적고, 복수디자인인 경우에는 다음 [예 3]과 같이 적으며, 아울러 디자인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수수료】란에 【그 밖의 수수료】란을 만들어 추가되는 디자인 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예 1] 【보정할 서류】 디자인등록출원서

【보정할 사항】

【보정대상 항목】 출원 구분

【보정방법】 정정

【보정내용】

【출원 구분】 디자인심사등록출원

[예 2] 【보정할 서류】 디자인등록출원서

【보정할 사항】

【보정대상 항목】 출원 구분

【보정방법】 정정

【보정내용】

【출원 구분】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

[예 3] 【보정할 서류】 디자인등록출원서

【보정할 사항】

【보정대상 항목】 출원 구분

【보정방법】 정정

【보정내용】

【출원 구분】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

【보정할 사항】

【보정대상 항목】 1디자인, 복수디자인 여부

【보정방법】 정정

【보정내용】

【1디자인, 복수디자인 여부】 복수디자인

【보정할 사항】

【보정대상 항목】 디자인의 수

【보정방법】 정정

【보정내용】

【디자인의 수】 3

8) 관련디자인을 단독디자인으로 변경하거나 단독디자인을 관련디자인으로 변경하는 보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 1] 또는 [예 2]와 같이 적습니다.

[예 1] 관련디자인을 단독디자인으로 변경하는 보정인 경우

【보정할 서류】 디자인등록출원서

【보정할 사항】

【보정대상 항목】 단독디자인, 관련디자인 여부

【보정방법】 정정

【보정내용】

【단독디자인, 관련디자인 여부】 단독디자인

[예 2] 단독디자인을 관련디자인으로 변경하는 보정인 경우

【보정할 서류】 디자인등록출원서

【보정할 사항】

【보정대상 항목】 단독디자인, 관련디자인 여부

【보정방법】 정정

【보정내용】

【단독디자인, 관련디자인 여부】 관련디자인

【보정대상항목】 기본디자인의 표시

【보정방법】 정정

【보정내용】

【기본디자인의 표시】

【출원(등록, 참조)번호】 30-2014-1234567

( 【디자인의 일련번호】 ) 디자인의 일련번호 M004

9) 관련디자인등록출원을 단독의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보정하면서 「디자인보호법」 제36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면 다음 예와 같이 【보정(보완, 보충)할 사항】란의 다음 줄에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 【공개형태】 및 【공개일】란을 각각 만들어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인정받으려는 디자인의 공개형태 및 공개일을 적습니다. 【첨부서류】란에는 주장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명을 적고 해당 서류를 보정서에 첨부합니다.

[예]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

【공개형태】 간행물예의 발표

【공개일】 2010. 07. 01.

다. 도면 등 보정의 경우

1) 【보정(보완, 보충)할 서류】란에는 다음 예와 같이 “디자인도면”으로 적습니다.

[예] 【보정할 서류】

【서류명】 디자인도면

또한, 복수디자인출원 중 일부디자인의 도면에 대하여 보정하는 경우에는 【보정(보완,

보충)할 서류】란에 해당 디자인의 일련번호를 추가로 적습니다.

[예 1] 【보정할 서류】

【서류명】 디자인 도면: 디자인의 일련번호 M003

[예 2] 【보정할 서류】

【서류명】 디자인 도면: 디자인의 일련번호 M001

【보정할 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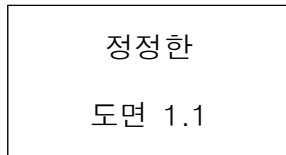
【서류명】 디자인 도면: 디자인의 일련번호 M003

- 2) 【보정(보완, 보충)대상 항목】란, 【보정(보완, 보충)방법】란 및 【보정(보완, 보충)내용】에는 모두 “별지와 같음”이라고 적고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 3) 별지에는 【보정대상 항목】, 【보정방법】 및 【보정내용】란을 만들어 적으며, 보정내용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식별 항목을 만들어 다음 예와 같이 적습니다. 복수디자인 출원 중 둘 이상의 디자인에 대하여 도면을 보정할 경우에는 각 디자인별로 면을 바꾸어 해당하는 디자인의 일련번호를 적은 후 【보정할 서류】, 【보정대상 항목】, 【보정방법】 및 【보정내용】란을 각각 만들어 적습니다.

[예 1] 【보정대상 항목】 도면 1.1

【보정방법】 정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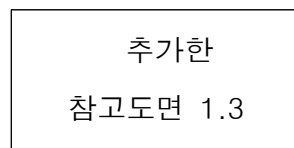
【보정내용】



[예 2] 【보정대상 항목】 참고도면 1.3

【보정방법】 추가

【보정내용】



[예 3] 【보정대상 항목】 참고도면 1.1

【보정방법】 삭제

- 4) 【보정대상 항목】란에는 보정하려는 식별 항목명을 적고, 【보정방법】란에는 “추가”, “삭제”, “정정” 중 하나만을 적으며, 보정방법을 복수로 적을 수 없습니다. 보정방법이 “추가” 또는 “정정”인 경우에는 【보정내용】란에 추가 또는 정정된 내용을 적고, 보정방법이 “삭제”인 경우에는 【보정내용】란을 삭제합니다.
- 5) 도면 중의 모든 식별 항목은 보정단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6) 【보정대상 항목】이 “디자인의 설명” 또는 “디자인의 창작내용의 요점”인 경우에는 【보정내용】란에 해당 식별 항목의 내용을 모두 새로 작성하여 적습니다.
- 7) 도면을 출원하였으나 디자인의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기 위하여 여러 벌의 도면이 필요한 경우(움직이는 것, 열리는 것 등의 디자인으로서 변화 전·후의 상태를 각각의 도면에 표현하려는 경우 등)에는 새로 추가되는 도면에는 기존의 도면과 구별할



수 있도록 다음 예와 같이 도면B로 구별하여 【도면B 1.1】 , 【도면B 1.2】 , 【도면 B 1.3】 … 순으로 적고, 【디자인의 설명】 란에 “변화 전 상태의 도면은 별도 알파벳 문자가 없는 도면 1.1부터 도면 1.7까지이며, 변화 후 상태의 도면은 도면B 1.1, 도면B 1.2, 도면B 1.3 … 등으로 표시한다”라고 설명하는 방식으로 여러 벌의 도면 간의 구분기준을 명시합니다.

[예 1] 새로운 벌의 도면이 추가되는 경우

【보정대상 항목】 도면B 1.1

【보정방법】 추가

【보정내용】

추가한 도면B 1.1
----------------

[예 2] 기존 도면의 일부가 수정되고 새로운 한 벌의 도면이 추가되는 경우

【보정대상 항목】 도면 1.1

【보정방법】 정정

【보정내용】

정정한 도면 1.1
---------------

【보정대상 항목】 도면B 1.1

【보정방법】 추가

【보정내용】

추가한 도면B 1.1
----------------

## 9. 【그 밖의 사항】 란

가. 도면 등 보정의 □ 안에 표시한 경우로서, 「디자인보호법」 제64조에 따른 기간에 심사관에 의한 거절결정서에 대한 보정서를 제출하면서 동시에 재심사를 청구할 때에는 다음 예와 같이 【그 밖의 사항】 란의 재심사청구 선택란에 표시합니다.

[예] 【그 밖의 사항】 재심사청구

나. 출원서 등 보정의 □ 안에 표시한 경우로서, 「디자인보호법」 제63조에 따른 기간에 심사관에 의한 거절이유통지에 대한 보정서를 제출하면서 동시에 지정기간의 단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그 밖의 사항】 란의 지정기간단축신청 선택란에 표시합니다.

[예] 【그 밖의 사항】 지정기간단축신청

## 10. 【수수료】 란

가. 【수수료】 란은 서식제출 후에 납부할 수수료의 금액을 적습니다. 보정료 납부대상인 경

우에는 【보정료】란에, 그 밖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보정료】란의 다음 줄에 【그 밖의 수수료】란을 만들어 해당하는 금액을 적고 【합계】란에는 그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심판청구서 등 보충의 경우에는 【수수료】란을 삭제합니다.

[예] 【수수료】

【보정료】

【그 밖의 수수료】

【합계】

나. 거절결정 이후 재심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보정료】란을 다음 예와 같이 【재심사청구에 따른 보정료】란으로 수정하여 해당 금액을 적고, 【합계】란에 그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예] 【수수료】

【재심사청구에 따른 보정료】

【합계】

다. 수수료 감면 또는 면제 대상자인 경우에는 【수수료】란의 【합계】란의 다음 줄에 【감면(면제)사유】 및 【감면(면제)후 수수료】란을 각각 만들어 해당 내용을 적습니다. 이 경우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7조를 참조하여 감면(면제)사유, 감면(면제)후 수수료를 적고, 감면 또는 면제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이 서식에 첨부합니다.

#### 11. 【수수료 자동납부번호】란

사전에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수수료 자동납부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해당 절차의 수수료를 자동납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서식을 서면 대신 전자문서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수수료 자동납부신청서에 적은 계좌번호를 해당 서식의 【수수료 자동납부번호】란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 12. 【첨부서류】란

가. 이 서식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정(보충)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기재방법 제3호, 제4호 및 제8호를 참조합니다)

나. 【첨부서류】란

1) 서식에 첨부할 서류명과 부수를 다음 예와 같이 적되, 서식과 함께 제출하지 않는 첨부서류는 적을 수 없습니다.

[예] 【첨부서류】 위임장 1통

2) 첨부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42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라 누구든지 서류로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에 해당하는 서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특허청장이 확인해야 하는 정보로서, 제출인은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서류의 명칭, 부수 및 그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적습니다.

[예]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통

[상호: ○○○, 법인등록번호: 000000-0000000]

3) 첨부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42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라

누구든지 서류로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 외의 행정정보(주민등록표 등본·초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인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특허청장이 확인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따라서 특허청장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고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서류의 명칭, 부수 및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적으면 관련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허청장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면 제출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예 1]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1통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예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예 3]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1통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보훈번호: 000-000000]

#### 다. 서류의 원용

- 1) 동시에 진행하는 둘 이상의 디자인에 관한 절차에서 제출하는 증명서(「디자인보호법」 제8조, 제36조제2항, 제51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명서만 해당합니다)가 같은 것일 경우에는 그 중 한 건에만 증명서의 원본을 제출하고, 다른 건에는 다음 예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적고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 위임장 1통 [같은 날짜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 디자인등록출원서

【출원번호】 30-2010-1234567

- 2) 이미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한 증명서(「디자인보호법」 제8조, 제36조제2항, 제51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명서만 해당합니다)와 같은 내용의 증명서를 다시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적고 그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 위임장 1통 [아래의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 심판청구서

【심판번호】 2010-당-123456

#### 라. 첨부서류를 전자적 이미지파일 형식으로 변환(스캐닝)하여 제출하는 경우 유의사항

- 1) 첨부서류로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파일 형식은 해상도 300dpi부터 400dpi까지(300dpi 권장)의 흑백 TIFF(Tagged Image File Format)파일이어야 합니다.
- 2)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흑백 또는 컬러 이미지로 제출 가능하며,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파일 형식은 해상도 300dpi부터 400dpi까지(300dpi 권장)의 JPEG(Joint Photographic Experts Group)파일이어야 합니다.

마. 첨부서류를 PDF(Portable Document Format)파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바. 도면을 3차원 모델링(Modeling)파일 형식으로 제출할 경우에는 3DS(3D Studio), DWG(Drawing), DWF(Design Web Format), IGES(Initial Graphic Exchange Specification) 또

는 3DM(3 Dimensional Modeling) 파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 화상아이콘디자인을 동영상파일 형식의 참고도면으로 제출할 경우에는 SWF(Small Web Format), MPEG(Moving Picture Experts Group), WMV(Window Media Video) 또는 Animated GIF(Graphics Interchange Format)파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동영상에는 디자인의 대상을 명확히 표현하여 중화질(640×480) 수준에 초당 용량이 600~700K/sec를 넘지 않아야 하며, 1출원의 용량은 총 200MB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아. 디자인등록출원 이후 보정 등을 위해 다시 도면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출원 시 첨부된 도면 형식과 같은 파일 형식을 다음과 같이 사용하여야 합니다.

[보정 시 제출 가능한 파일 형식]

제출 형식	출원 시 제출파일 형식		보정 시 제출파일 형식	허용 여부
입체, 평면, 글자체디자인 (2D이미지 파일 형식 제출 시)	도면 및 부가도면	2D이미지파일 제출 (TIFF, JPEG)	⇒ 2D이미지파일(TIFF, JPEG)	허용
			⇒ 3D모델링파일(3DS, DWG, DWF, IGES, 3DM)	불가
			⇒ 동영상파일(SWF, MPEG, WMV, Animated GIF)	불가
	참고도면	2D이미지파일 제출 (TIFF, JPEG)	⇒ 2D이미지파일(TIFF, JPEG)	허용
			⇒ 3D모델링파일(3DS, DWG, DWF, IGES, 3DM)	불가
			⇒ 동영상파일(SWF, MPEG, WMV, Animated GIF)	불가
입체디자인 (3D모델링 파일 형식 제출 시)	도면 및 부가도면	3D모델링파일 제출 (3DS, DWG, DWF, IGES)	⇒ 2D이미지파일(TIFF, JPEG)	불가
			⇒ 3D모델링파일(3DS, DWG, DWF, IGES, 3DM)	허용
			⇒ 동영상파일(SWF, MPEG, WMV, Animated GIF)	불가
	참고도면	3D모델링파일 제출 (3DS, DWG, DWF, IGES)	⇒ 2D이미지파일(TIFF, JPEG)	불가
			⇒ 3D모델링파일(3DS, DWG, DWF, IGES, 3DM)	허용
			⇒ 동영상파일(SWF, MPEG, WMV, Animated GIF)	불가
화상아이콘 디자인 (동영상파일 형식 제출 시)	도면 및 부가도면	2D이미지파일 제출 (TIFF, JPEG)	⇒ 2D이미지파일(TIFF, JPEG)	허용
			⇒ 3D모델링파일(3DS, DWG, DWF, IGES, 3DM)	불가
			⇒ 동영상파일(SWF, MPEG, WMV, Animated GIF)	불가
	참고도면	2D이미지파일 제출 (TIFF, JPEG)	⇒ 2D이미지파일(TIFF, JPEG)	허용
			⇒ 3D모델링파일(3DS, DWG, DWF, IGES, 3DM)	불가
			⇒ 동영상파일(SWF, MPEG, WMV, Animated GIF)	허용
			⇒ 2D이미지파일과 동영상파일의 혼합 (TIFF, JPEG, SWF, MPEG, WMV, Animated GIF)	허용
		동영상파일 제출 (SWF, MPEG, WMV, Animated GIF)	⇒ 2D이미지파일(TIFF, JPEG)	허용
			⇒ 3D모델링파일(3DS, DWG, DWF, IGES, 3DM)	불가
			⇒ 동영상파일(SWF, MPEG, WMV, Animated GIF)	허용
			⇒ 2D이미지파일과 동영상파일의 혼합	허용

			(TIFF, JPEG, SWF, MPEG, WMV, Animated GIF)		
		2D이미지파일과 동영상파일의 혼합 제출 (SWF, MPEG, WMV, Animated GIF, TIFF, JPEG)	⇒	2D이미지파일(TIFF, JPEG)	허용
				3D모델링파일(3DS, DWG, DWF, IGES, 3DM)	불가
				동영상파일(SWF, MPEG, WMV, Animated GIF)	허용
				2D이미지파일과 동영상파일의 혼합 (TIFF, JPEG, SWF, MPEG, WMV, Animated GIF)	허용

### 13. 작성 시 유의사항

서식은 제출인(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기명을 한 후에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하며, 2인 이상의 제출인(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 기명을 한 후에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합니다. 서명 또는 날인 시의 인감은 출원인등록[대리인이 변리사인 경우에는 변리사등록, 대리인이 특허법인 또는 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법인등록] 시 사용한 것과 같은 서명 또는 인감을 사용하며, 특허고객번호 정보변경(경정), 정정신고서에 따라 서명 또는 인감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서명 또는 인감을 사용해야 합니다.

## 디자인등록출원서

(앞쪽)

- 【출원 구분】  디자인심사등록출원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  
 디자인심사등록분할출원  디자인일부심사등록분할출원  
 정당한 권리자의 디자인심사등록출원  
 정당한 권리자의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

( 【참조번호】 )

【출원인】

【성명(명칭)】

【특허고객번호】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번호】

( 【포괄위임등록번호】 )

( 【원출원(무권리자 출원)의 출원번호(국제등록번호)】 )

【단독디자인, 관련디자인 여부】

( 【기본디자인의 표시】 )

【출원번호(등록번호, 국제등록번호, 참조번호)】

( 【디자인의 일련번호】 )

【1디자인, 복수디자인 여부】

( 【디자인의 수】 )

【물품류】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부분디자인 여부】

【창작자】

【성명】

【특허고객번호】

( 【우선권 주장】

【출원국명】

【출원번호(국제등록번호)】

【출원일(국제등록일)】

【증명서류】  첨부  미첨부 )

【접근코드】 )

( 【그 밖의 사항】  디자인등록출원 공개신청  디자인비밀보장 청구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

위와 같이 특허청장에게 제출합니다.

출원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수수료】 (기재방법 제16호 참조)

【출원료】

개 디자인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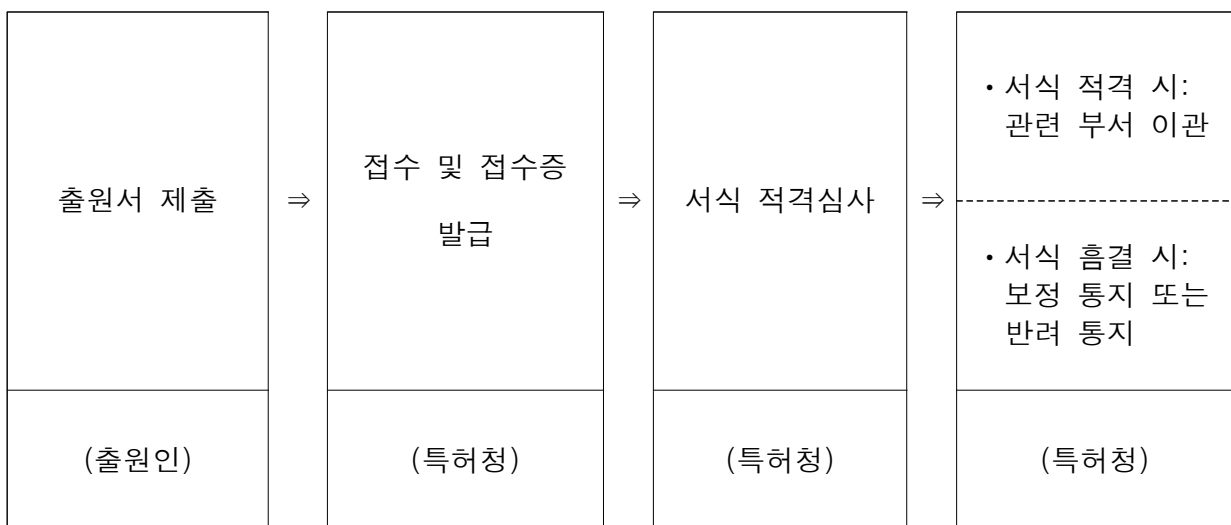
( 【수수료 자동납부번호】 )

- 【첨부서류】 1. 도면(사진·견본) 1통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인 경우에는 각 디자인마다 1통을 말합니다)  
2. 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 (기재방법 제18호 참조)

1. 출원 구분 및 관련 규정

출원 구분	내용	관련 규정
디자인심사등록출원	일부심사등록 대상물품을 제외한 물품을 대상으로 디자인등록 출원을 하는 경우	「디자인보호법」 제37조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35조 및 제38조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	일부심사등록 대상물품을 대상으로 디자인등록출원을 하는 경우	「디자인보호법」 제37조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35조 및 제38조
디자인심사등록분할출원	1디자인심사등록출원을 기초로 그 일부에 대한 디자인심사등록 출원을 하는 경우	「디자인보호법」 제50조 및 제187조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46조
디자인일부심사등록분할출원	1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을 기초로 그 일부에 대한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을 하는 경우	「디자인보호법」 제50조 및 제187조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46조
정당한 권리자의 디자인심사등록출원	무권리자의 디자인등록출원 후에 정당한 권리자가 디자인심사등록출원을 하는 경우	「디자인보호법」 제44조 및 제45조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41조
정당한 권리자의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	무권리자의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 후에 정당한 권리자가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 하는 경우	「디자인보호법」 제44조 및 제45조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41조

2. 처리절차



## ※ 기재방법

### 1. 【출원 구분】란

가. 출원 구분 중 하나를 선택하여  안에 표시(예: )합니다.

나. ‘디자인심사등록출원’은 별표 4(물품류 구분)에서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에 해당되는 물품류(2류, 5류, 19류)를 제외한 물품류가 해당됩니다.

다.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은 별표 4(물품류 구분)에서 2류, 5류, 19류가 해당됩니다.

### 2. 【참조번호】란

동일한 제출인(출원인 또는 대리인)이 동시(같은 날짜)에 둘 이상의 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각 출원서를 구분하기 위하여 다음 예와 같이 【출원 구분】란의 다음 줄에 【참조번호】란을 만들어 제출매체(온라인, 이동식저장장치, 서면)에 따라 새로 시작되는 제출인별·권리별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예] 【출원 구분】

【참조번호】 01

### 3. 【출원인】란

가. 특허고객번호가 있는 경우

- 1) 【성명(명칭)】란에는 특허고객번호부여신청서에 적은 한글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습니다.
- 2) 제출인이 「디자인보호법」 제179조에 따른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이하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이라 한다) 출원인인 경우에는 【성명(명칭)】란에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 협정」 제1조(viii)에 따른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것과 같은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습니다.
- 3) 제출인이 국제디자인등록출원과 관련된 심판사건의 제출인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성명(명칭)】란은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외래어표기법에 따라 한글로 음역하여 성과 이름 사이에 한 칸 띄어쓰기하여 적고, 【성명(명칭)】란의 다음 줄에 【성명(명칭)의 영문 표기】란을 만들어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 협정」 제1조(viii)에 따른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것과 같은 문자로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습니다.

[예] 【제출인】

【성명(명칭)】 케네디 존 에프

【성명(명칭)의 영문 표기】 KENNEDY John F.

【특허고객번호】 0-0000-000000-0

- 4) 【특허고객번호】란에는 특허청에서 부여한 특허고객번호를 적습니다.

나.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

- 1) 【출원인】란의 다음 행에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특허고객번호 부여신청서)의 기재요령 제1호를 참조하여 제출인의 【성명(명칭)의 국문표기】 및 【성명(명칭)의 영문표기】 등 필요한 난을 만들어 적습니다.
- 2) 출원인은 직접 서명하거나 인감을 날인해야 하며, 그 방법은 원칙적으로 【첨부서류】란이 있는 쪽의 다음 쪽에 【출원인 ○○○의 인감(서명)】란을 만들고 그 아래에 가로 4cm × 세로 4cm의 인감 날인란(서명란)을 만들어 직접 서명하거나 출원인의 인감을 선명하게



날인합니다. 2인 이상의 출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출원인의 수대로 【출원인 ○○○의 인감(서명)】란을 만들어 모든 출원인이 직접 서명하거나 인감을 날인합니다.

#### 다. 공통

- 1) 2인 이상의 출원인이 공동으로 출원하고, 출원과 동시에 대표자 선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출원인】란의 다음 줄에 【특기사항】란을 만들고 “출원인 대표자”와 같이 적으며, 【첨부서류】란에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명을 적고 이를 출원서에 첨부합니다.
- 2) 2인 이상의 출원인이 공동으로 출원하고 상호간에 지분이 약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출원인】란의 다음 줄에 【지분】란을 만들고 “출원인 지분 ○/□”과 같이 지분내용을 분수로 적고, 【첨부서류】란에 “지분약정서”라고 적어 이를 출원서에 첨부합니다.
- 3) 「디자인보호법」 제96조제3항에 따라 특별히 약정한 경우, 「민법」 제26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계약을 한 경우 또는 제3자의 허가, 인가, 동의, 승낙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출원인】란의 다음 줄에 【그 밖의 사항】란을 만들어 그 취지를 적고, 【첨부서류】란에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명을 적어 이를 출원서에 첨부합니다.
- 4) ~~변리사 또는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 외의 임의대리인에 의하여 출원하거나~~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출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출원인】란의 다음 줄에 【~~법정대리인-등~~】란을 만들어 ~~법정대리인-등의~~ 【성명】 및 【특허고객번호】를 적고,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이 서식에 첨부합니다.

[예] 【출원인】

【~~법정대리인-등~~】

【성명】

【특허고객번호】

#### 4. 【대리인】란

가.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리인번호를 적습니다. 대리인이 특허법인 또는 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대리인번호】란의 다음 줄에 【지정된 변리사】란을 만들어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모두 적습니다.

[예] 【대리인】

【성명(명칭)】 특허법인 ○○○○

【대리인번호】 (특허법인의 대리인번호)

【지정된 변리사】 변리사 ○○○, 변리사 ○○○

나. 포괄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대리인번호】란의 다음 줄에 【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포괄위임등록번호를 적고, 대리인이 2인 이상의 위임자와 포괄위임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위임자의 수대로 【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모두 적습니다.

[예]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다.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이 위임자 모두를 대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대리인번호】**란의 다음 줄에 **【특기사항】**란을 만들어 적습니다.

[예] **【대리인번호】**

**【특기사항】** 출원인 ○○○의 대리인

라.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인 경우 **【첨부서류】**란에 “위임장”이라 적고, 위임장을 이 서식에 첨부하며, 위임장의 기재사항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위임장)을 참고하여 작성합니다.

5. **【원출원(무권리자 출원)의 출원번호(국제등록번호)】**란

가. 분할출원을 하는 경우 **【원출원의 출원번호(국제등록번호)】**란에는 분할출원의 기초가 된 선출원의 출원번호나 국제등록번호를 다음 예와 같이 적습니다.

[예] **【원출원의 출원번호】** 30-2010-1234567

나.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을 하는 경우 **【무권리자의 출원번호】**란에는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과 관련되는 무권리자의 출원번호를 적습니다.

6. **【단독디자인, 관련디자인 여부】**란

**【단독디자인, 관련디자인 여부】**란에는 해당 여부를 “단독디자인” 또는 “관련디자인”과 같이 적습니다.

7. **【기본디자인의 표시】**란

이 난은 관련디자인등록출원의 경우에만 적으며, **【출원번호(등록번호, 국제등록번호, 참조번호)】**란에는 기본디자인의 출원번호, 등록번호, 국제등록번호, 참조번호 중 하나를 적고, 기본디자인이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 중의 하나인 경우에는 추가로 **【디자인의 일련번호】**란에 해당 디자인의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가. 기본디자인과 관련디자인을 한 개의 복수디자인으로 출원하는 경우

[예] **【기본디자인의 표시】**

**【디자인의 일련번호】** M001

※ 기본디자인의 **【디자인의 일련번호】**만을 적습니다.

나. 기본디자인과 관련디자인을 동시에 각각 별개 출원하는 경우

[예] **【기본디자인의 표시】**

**【참조번호】** 01

**【디자인의 일련번호】** M001

다. 기본디자인등록출원 이후 관련디자인을 출원하는 경우

[예] **【기본디자인의 표시】**

**【출원번호】** 30-2014-1234567

**【디자인의 일련번호】** M001

라. 기본디자인 설정등록(2014년 7월 1일 전에 복수디자인등록출원하여 설정등록된 것만 해당합니다) 이후 관련디자인을 출원하는 경우

[예] 【기본디자인의 표시】

【등록번호】 30-1234567-00-00

【디자인의 일련번호】 M08

마. 위의 기재방법 중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디자인의 일련번호】란은 기본디자인이 1디자인으로 출원된 경우에는 적을 필요가 없으며, 기본디자인이 복수디자인으로 출원되거나 설정등록된 경우에만 그 기본디자인에 해당하는 디자인의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8. 【1디자인, 복수디자인 여부】란

【기본디자인의 표시】란 다음 줄에 【1디자인, 복수디자인 여부】란을 만들어 “1디자인” 또는 “복수디자인”과 같이 그 구분을 명시합니다.

9. 【디자인의 수】란

가. 1디자인의 경우에는 디자인의 개수를 적을 필요가 없으며, 복수디자인인 경우에만 디자인의 개수(최대 100개까지)를 적습니다.

나. 디자인의 개수가 두 개 이상인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의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디자인의 수】란의 다음 줄에 【디자인의 일련번호】란을 만들고 디자인의 일련번호 순서대로 【물품류】 ,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 【부분디자인 여부】 , 【단독디자인, 관련디자인 여부】 , ( 【기본디자인의 표시】 ) , 【창작자】 및 ( 【우선권 주장】 )란을 디자인의 수만큼 만들어 모두 적습니다.

[예] 디자인의 일련번호 M001은 부분디자인이고, 디자인의 일련번호 M002는 부분디자인이 아닌 경우

【디자인의 일련번호 M001】

【물품류】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부분디자인 여부】

【단독디자인, 관련디자인 여부】

( 【기본디자인의 표시】 )

【출원번호】

( 【디자인의 일련번호】 )

【창작자】

【성명】

【특허고객번호】

( 【우선권 주장】

【출원국명】

【출원번호】

【출원일】

【증명서류】 )

【디자인의 일련번호 M002】

- 【물품류】
-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 【단독디자인, 관련디자인 여부】
- ( 【기본디자인의 표시】 )
- 【출원번호】
- ( 【디자인의 일련번호】 )
- 【창작자】
- 【성명】
- 【특허고객번호】
- ( 【우선권 주장】
- 【출원국명】
- 【출원번호】
- 【출원일】
- 【증명서류】 )

10. 【물품류】란

이 난에는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4(물품류 구분)에서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이 속하는 하나의 물품류를 선택하여 다음 예와 같이 적습니다.

[예] 【물품류】 제1류

11.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란

가. 이 난에는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에 따라 특허청장이 고시한 물품의 명칭을 적습니다. 다만, 고시에 등록받으려는 물품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물품의 디자인을 인식하는 데 적합한 명칭으로서, 그 물품의 용도가 명확히 이해될 수 있는 일반적인 명칭을 적습니다.

나. 부분디자인을 출원하는 경우에도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란에는 다음의 예와 같이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에 따라 특허청장이 고시한 물품의 명칭 중 한 개의 물품명을 적으며, 물품의 부분의 명칭(예: 커피잔의 손잡이)을 적어서는 안 됩니다.

[예]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커피잔

다.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5(한 벌의 물품의 구분)에 따라 적습니다.

12. 【부분디자인 여부】란

부분디자인을 출원하는 경우에는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란 다음 줄에 【부분디자인 여부】란을 만들어 “부분디자인”이라고 적습니다. 부분디자인의 출원이 아닌 경우에는 이 난을 만들지 않습니다.

13. 【창작자】란

가. 특허고객번호가 있는 경우

【성명】란에 특허고객번호 부여신청서에 적은 국문 성명을 적고, 【특허고객번호】란에는

특허청에서 부여한 특허고객번호를 적습니다. 출원인과 창작자가 동일한 경우에도 해당 출원인의 특허고객번호를 적습니다.

나.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

- 1) 【창작자】란에 창작자의 【성명의 국문표기】 , 【성명의 영문표기】 , ( 【주민등록번호】 ) , 【우편번호】 및 【주소】란을 각각 만들어 적습니다.
- 2) 창작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주소】란의 다음 줄에 【국적】란을 만들어 특허청장이 공고하는 2자리 영문코드로 적고, ( 【주민등록번호】 )란은 삭제하며, 【주소의 영문표기】란을 만들어 주소를 영문으로 적습니다.
- 3) 【창작자】란의 세부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기재사항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특허고객번호부여신청서)의 기재요령 제1호를 참조하여 작성합니다.

#### 14. 【우선권 주장】란

【우선권 주장】란은 외국에 출원한 것으로서 최초에 출원한 【출원국명】 , 【출원번호】 및 【출원일】을 적고, 우선권 주장 서류를 출원과 동시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증명서류】란에 “첨부”라고 적으며, 그 서류를 추후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증명서류】란에 “미첨부”라고 적습니다. 다만, 출원국명이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47조제2항에 따라 특허청장이 고시하는 국가인 경우에는 【증명서류】란에 실제로 증명서류를 첨부하지 않는 경우에도 “첨부”라고 적습니다.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47조제7항에 따라 접근코드를 적으려는 경우에는 【접근코드】란에 해당 접근코드를 적고 접근코드가 없는 경우에는 “없음”이라고 적습니다. 우선권 주장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적지 않으며, 둘 이상의 우선권 주장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식별항목을 만들어 모두 적습니다.

[예] 【우선권 주장】

【출원국명】 US  
 【출원번호】 98-123456  
 【출원일】 1999. 07. 01.  
 【증명서류】 첨부  
 【접근코드】 4321

【우선권 주장】

【출원국명】 JP  
 【출원번호】 62-1234  
 【출원일】 1999. 08. 01.  
 【증명서류】 미첨부  
 【접근코드】 8765

#### 15. 【그 밖의 사항】란

가. 다음 표의 내용을 참조하여 해당하는 사항의  안에 모두 표시(예: )합니다.

구분	내용	관련규정
디자인등록출원 공개신청	출원과 동시에 공개신청을 하는 경우	「디자인보호법」 제52조



로서 해당 절차의 수수료를 자동납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서식을 서면 대신 전자문서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수수료 자동납부신청서에 적은 계좌번호를 해당 서식의 【수수료 자동납부번호】란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 18. 【첨부서류】란

가. 서식에 첨부할 서류명과 부수를 다음 예와 같이 적되, 서식과 함께 제출하지 않는 첨부서류는 적을 수 없습니다.

[예] 【첨부서류】 위임장 1통

나. 첨부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42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라 누구든지 서류로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에 해당하는 서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특허청장이 확인해야 하는 정보로서, 출원인은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서류의 명칭, 부수 및 그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적습니다.

[예]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통 [상호: ○○○, 법인등록번호: 000000-0000000]

다. 첨부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42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라 누구든지 서류로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 외의 행정정보(주민등록표 등본·초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에 해당하는 서류는 출원인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특허청장이 확인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따라서 특허청장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고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서류의 명칭, 부수 및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적으면 관련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허청장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면 출원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예 1]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1통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예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예 3]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1통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보훈번호: 000-000000]

#### 라. 서류의 원용

1) 동시에 진행하는 둘 이상의 디자인에 관한 절차에서 제출하는 증명서(「디자인보호법」 제8조, 제36조제2항, 제51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명서만 해당합니다)가 같은 것일 경우에는 그 중 한 건에만 증명서의 원본을 제출하고, 다른 건에는 다음 예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적고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 위임장 1통 [같은 날짜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 디자인등록출원서

【출원번호】 30-2010-1234567

2) 이미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한 증명서(「디자인보호법」 제8조, 제36조제2항, 제51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명서만 해당합니다)와 같은 내용의 증명서를 다시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적고 그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 위임장 1통 [아래의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 심판청구서

【심판번호】 2010-당-123456

마. 첨부서류를 전자적 이미지파일 형식으로 변환(스캐닝)하여 제출하는 경우 유의사항

- 1) 첨부서류로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파일 형식은 해상도 300dpi부터 400dpi까지(300dpi 권장)의 흑백 TIFF(Tagged Image File Format)파일이어야 합니다.
- 2)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흑백 또는 컬러 이미지로 제출 가능하며,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파일 형식은 해상도 300dpi부터 400dpi까지(300dpi 권장)의 JPEG(Joint Photographic Experts Group)파일이어야 합니다.

바. 첨부서류를 PDF(Portable Document Format)파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 도면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디자인 도면) 또는 별지 제5호서식(글자체 디자인 도면)의 작성요령에 따라 도면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아. 도면을 3차원 모델링(Modeling)파일 형식으로 제출할 경우에는 3DS(3D Studio), DWG(Drawing), DWF(Design Web Format), IGES(Initial Graphic Exchange Specification) 또는, 3DM(3 Dimensional Modeling) 파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화상아이콘디자인을 동영상파일 형식의 참고도면으로 제출할 경우에는 SWF(Small Web Format), MPEG(Moving Picture Experts Group), WMV(Window Media Video) 또는 Animated GIF(Graphics Interchange Format)파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동영상에는 디자인의 대상을 명확히 표현하여 중화질(640×480)수준에 초당 용량이 600~700K/sec를 넘지 않아야 하며, 1출원의 용량은 총 200MB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차. 도면을 전자적 이미지파일 또는 3차원 모델링파일 형식으로 제출하거나 화상아이콘디자인을 동영상파일 형식의 참고도면으로 제출할 경우에는 다음 표에 따른 파일 형식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1디자인의 제출 시 파일 형식]

제출 형식	출원 시 제출파일 형식		허용 여부
입체, 평면, 글자체디자인	도면 및	2D이미지파일 제출 (TIFF, JPEG)	허용
	부가	3D모델링파일 제출 (3DS, DWG, DWF, IGES, 3DM)	불가
	도면	동영상파일 제출 (SWF, MPEG, WMV, Animated GIF)	불가
(2D이미지파일 형식 제출 시)	참고	2D이미지파일 제출 (TIFF, JPEG)	허용
	도면	3D모델링파일 제출 (3DS, DWG, DWF, IGES, 3DM)	불가
		동영상파일 제출 (SWF, MPEG, WMV, Animated GIF)	불가
입체디자인 (3D모델링파일 형식 제출 시)	도면 및	2D이미지파일 제출 (TIFF, JPEG)	불가
	부가	3D모델링파일 제출 (3DS, DWG, DWF, IGES, 3DM)	허용
	도면	동영상파일 제출 (SWF, MPEG, WMV, Animated GIF)	불가
	참고	2D이미지파일 제출 (TIFF, JPEG)	불가
		3D모델링파일 제출 (3DS, DWG, DWF, IGES, 3DM)	허용
도면	동영상파일 제출 (SWF, MPEG, WMV, Animated GIF)	불가	
화상아이콘디자인 (동영상파일)	도면 및	2D이미지파일 제출 (TIFF, JPEG)	허용
		3D모델링파일 제출 (3DS, DWG, DWF, IGES, 3DM)	불가
	부가	동영상파일 제출 (SWF, MPEG, WMV, Animated GIF)	불가



형식 제출 시)	도면		
	참고 도면	2D이미지파일 제출 (TIFF, JPEG)	허용
		3D모델링파일 제출 (3DS, DWG, DWF, IGES, 3DM)	불가
		동영상파일 제출 (SWF, MPEG, WMV, Animated GIF)	허용
	2D이미지파일과 동영상파일의 혼합 제출 (TIFF, JPEG, SWF, MPEG, WMV, Animated GIF)	허용	

[복수디자인의 제출 시 파일 형식]

※ 복수디자인을 하나의 출원서로 제출할 경우에는 다음 표에 따른 파일 형식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제출 형식	M001의 제출파일 형식		M002의 제출파일 형식		허용 여부
입체, 평면, 글자체디자인 (2D)	도면 및 부가도면	2D이미지파일 제출 (TIFF, JPEG)	⇒	2D이미지 파일(TIFF, JPEG)	허용
				3D모델링파일(3DS, DWG, DWF, IGES, 3DM)	불가
				동영상파일(SWF, MPEG, WMV, Animated GIF)	불가
이미지파일 형식 제출 시)	참고도면	2D이미지파일 제출 (TIFF, JPEG)	⇒	2D이미지 파일(TIFF, JPEG)	허용
				3D모델링파일(3DS, DWG, DWF, IGES, 3DM)	불가
				동영상파일(SWF, MPEG, WMV, Animated GIF)	불가
입체디자인 (3D 모델링파일 형식 제출 시)	도면 및 부가도면	3D모델링파일 제출(3DS, DWG, DWF, IGES)	⇒	2D이미지 파일(TIFF, JPEG)	불가
				3D모델링파일(3DS, DWG, DWF, IGES, 3DM)	허용
				동영상파일(SWF, MPEG, WMV, Animated GIF)	불가
화상아이콘 디자인 (동영상파일 형식 제출 시)	참고도면	2D이미지파일 제출 (TIFF, JPEG)	⇒	2D이미지 파일(TIFF, JPEG)	허용
				3D모델링파일(3DS, DWG, DWF, IGES, 3DM)	불가
				동영상파일(SWF, MPEG, WMV, Animated GIF)	불가
동영상파일 제출 시)	참고도면	동영상파일 제출 (SWF, MPEG, WMV, Animated)	⇒	2D이미지 파일(TIFF, JPEG)	허용
				3D모델링파일(3DS, DWG, DWF, IGES, 3DM)	불가
				동영상파일(SWF, MPEG, WMV, Animated GIF)	허용

	GIF)	동영상파일(SWF, MPEG, WMV, Animated GIF)	허용
		2D이미지파일과 동영상파일의 혼합(TIFF, JPEG, SWF, MPEG, WMV, Animated GIF)	허용
	2D이미지파일과 동영상파일의 혼합 제출(SWF, MPEG, WMV, Animated GIF, TIFF, JPEG) ⇨	2D이미지파일(TIFF, JPEG)	허용
		3D모델링파일(3DS, DWG, DWF, IGES, 3DM)	불가
		동영상파일(SWF, MPEG, WMV, Animated GIF)	허용
	2D이미지파일과 동영상파일의 혼합(TIFF, JPEG, SWF, MPEG, WMV, Animated GIF)	허용	

## 19. 작성 시 유의사항

서식은 출원인(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기명을 한 후에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하며, 2인 이상의 출원인(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 기명을 한 후에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합니다. 서명 또는 날인 시의 인감은 출원인등록[대리인이 변리사인 경우에는 변리사 등록, 대리인이 특허법인 또는 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법인등록] 시 사용한 것과 동일한 서명 또는 인감을 사용하며, 특허고객번호 정보변경(경정), 정정신고서에 따라 서명 또는 인감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서명 또는 인감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디자인등록출원공개신청서

(앞쪽)

**【출원인】**

**【성명(명칭)】**

**【특허고객번호】**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번호】**

( **【포괄위임등록번호】** )

**【사건의 표시】**

**【출원번호】**

( **【디자인의 일련번호】** )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위와 같이 특허청장에게 제출합니다.

출원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수수료】** 원 (기재방법 제4호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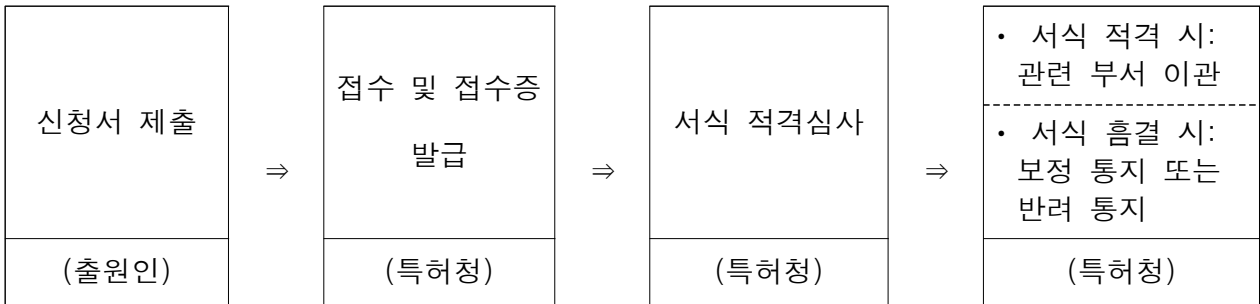
( **【수수료 자동납부번호】** )

**【첨부서류】** 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 (기재방법 제6호 참조)

1. 서식의 용도 및 관련 규정

이 서식은 출원인이 자기의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공개를 신청하려는 경우에 제출합니다(관련 규정: 「디자인보호법」 제52조).

2. 처리절차



※ 기재방법

1. 【출원인】란

가. 특허고객번호가 있는 경우

- 1) 【성명(명칭)】란에는 특허고객번호부여신청서에 적은 한글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습니다.
- 2) 제출인이 「디자인보호법」 제179조에 따른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이하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이라 한다) 출원인인 경우에는 【성명(명칭)】란에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 협정」 제1조(viii)에 따른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것과 같은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습니다.
- 3) 제출인이 국제디자인등록출원과 관련된 심판사건의 제출인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성명(명칭)】란은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외래어표기법에 따라 한글로 음역하여 성과 이름 사이에 한 칸 띄어쓰기하여 적고, 【성명(명칭)】란의 다음 줄에 【성명(명칭)의 영문 표기】란을 만들어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 협정」 제1조(viii)에 따른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것과 같은 문자로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습니다.

[예] 【제출인】

【성명(명칭)】 케네디 존 에프

【성명(명칭)의 영문 표기】 KENNEDY John F.

【특허고객번호】 0-0000-000000-0

- 4) 【특허고객번호】란에는 특허청에서 부여한 특허고객번호를 적습니다.

나.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

- 1) 【출원인】란의 다음 행에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특허고객번호부여신청서)의 기재요령 제1호를 참조하여 제출인의 【성명(명칭)의 국문표기】 및 【성명(명칭)의 영문표기】 등 필요한 난을 만들어 적습니다.
- 2) 출원인은 직접 서명하거나 인감을 날인해야 하며, 그 방법은 원칙적으로 【첨부서류】란이 있는 쪽의 다음 쪽에 【출원인 ○○○의 인감(서명)】란을 만들고 그 아래에 가로 4cm × 세로 4cm의 인감 날인란(서명란)을 만들어 직접 서명하거나 출원인의 인감을 선명하게

날인합니다. 2인 이상의 출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출원인의 수대로 【출원인 ○○○의 인감(서명)】란을 만들어 모든 출원인이 직접 서명하거나 인감을 날인합니다.

다. 공통

- 1) 【사건과의 관계】란은 “출원인”, “등록권리자”, “제3자”, “청구인”, “피청구인”, “이의신청인” 등과 같이 제출인과 사건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적습니다.
- 2) ~~변리사 또는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 외의 임의대리인에 의하여 출원하거나~~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출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출원인】란의 다음 줄에 【~~법정대리인-등~~】란을 만들어 ~~법정대리인-등의~~ 【성명】 및 【특허고객번호】를 적고,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예] 【출원인】

【~~법정대리인-등~~】

【성명】

【특허고객번호】

2. 【대리인】란

가.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리인번호를 적습니다. 대리인이 특허법인 또는 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대리인번호】란의 다음 줄에 【지정된 변리사】란을 만들어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모두 적습니다.

[예] 【대리인】

【성명(명칭)】 특허법인 ○○○○

【대리인번호】 (특허법인의 대리인번호)

【지정된 변리사】 변리사 ○○○, 변리사 ○○○

나. 포괄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대리인번호】란의 다음 줄에 【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포괄위임등록번호를 적고, 대리인이 2인 이상의 위임자와 포괄위임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위임자의 수대로 【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모두 적습니다.

[예]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다.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이 위임자 모두를 대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대리인번호】란의 다음 줄에 【특기사항】란을 만들어 적습니다.

[예] 【대리인번호】

【특기사항】 제출인 ○○○의 대리인

라.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인 경우 【첨부서류】란에 “위임장”이라 적고, 위임장을 이 서식에 첨부하며, 위임장의 기재사항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위임장)을 참

조하여 작성합니다.

### 3. 【사건의 표시】란

가. 【출원번호】란에는 해당 건의 출원번호(예: 30-2014-1234567)를 적습니다.

나. 【디자인의 일련번호】란은 복수디자인등록출원(2014년 7월 1일 이후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것만 해당합니다)된 디자인 중 일부 일련번호의 디자인에 대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다음 예와 같이 적습니다.

[예] 【사건의 표시】

【출원번호】 30-2014-1234567

【디자인의 일련번호】 M002, M005, M009

다.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란에는 출원서의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란에 적힌 것과 동일하게 적습니다. 다만, 복수디자인등록출원(2014년 7월 1일 이후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것만 해당합니다)된 디자인 중 전부 또는 일부 디자인에 대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그 중 가장 앞선 일련번호 디자인의 물품명을 적습니다.

[예] 【사건의 표시】

【출원번호】 30-2014-1234567

【디자인의 일련번호】 M002, M005, M009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신사복 등

### 4. 【수수료】란

【수수료】란은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4조제1항을 참조하여 출원공개건수와 디자인등록 출원공개 신청료 금액을 적습니다.

### 5. 【수수료 자동납부번호】란

사전에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수수료 자동납부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해당 절차의 수수료를 자동납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서식을 서면 대신 전자문서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수수료 자동납부신청서에 적은 계좌번호를 해당 서식의 【수수료 자동납부번호】란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 6. 【첨부서류】란

가. 서식은 출원인(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기명을 한 후에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하며, 2인 이상의 출원인(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 기명을 한 후에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합니다. 서명 또는 날인 시의 인감은 출원인등록[대리인이 변리사인 경우에는 변리사등록, 대리인이 특허법인 또는 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법인등록] 시 사용한 것과 동일한 서명 또는 인감을 사용하며, 특허고객번호 정보변경(경정), 정정신고서에 따라 서명 또는 인감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서명 또는 인감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나. 첨부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42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라 누구든지 서류로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에 해당하는 서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특허청장이 확인해야 하는 정보로서, 출원인은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서류의 명칭, 부수 및 그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적습니다.

[예]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통 [상호: ○○○, 법인등록번호: 000000-0000000]

다. 첨부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42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라 누구든지 서류로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 외의 행정정보(주민등록표 등본·초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에 해당하는 서류는 출원인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특허청장이 확인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따라서 특허청장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고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서류의 명칭, 부수 및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적으면 관련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허청장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면 출원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예 1]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1통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예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예 3]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1통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보훈번호: 000-000000]

라. 서류의 원용

1) 동시에 진행하는 둘 이상의 디자인에 관한 절차에서 제출하는 증명서(「디자인보호법」 제8조, 제36조제2항, 제51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명서만 해당합니다)가 같은 것일 경우에는 그 중 한 건에만 증명서의 원본을 제출하고, 다른 건에는 다음 예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적고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 위임장 1통 [같은 날짜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 디자인등록출원서

【출원번호】 30-2010-1234567

2) 이미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한 증명서(「디자인보호법」 제8조, 제36조제2항, 제51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명서만 해당합니다)와 같은 내용의 증명서를 다시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적고 그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 위임장 1통 [아래의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 심판청구서

【심판번호】 2010-당-123456

마. 첨부서류를 전자적 이미지파일 형식으로 변환(스캐닝)하여 제출하는 경우 유의사항

1) 첨부서류로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파일 형식은 해상도 300dpi부터 400dpi까지(300dpi 권장)의 흑백 TIFF(Tagged Image File Format)파일이어야 합니다.

2)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흑백 또는 컬러 이미지로 제출 가능하며,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파일 형식은 해상도 300dpi부터 400dpi까지(300dpi 권장)의 JPEG(Joint Photographic Experts Group)파일이어야 합니다.

바. 첨부서류를 PDF(Portable Document Format)파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7. 작성 시 유의사항

서식은 출원인(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기명을 한 후에 서명 또는 날 인해야 하며, 2인 이상의 출원인(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 기명을 한 후에 서명 또는 날 인해야 합니다. 서명 또는 날인 시의 인감은 출원인등록[대리인이 변리사인 경우에는 변리사 등록, 대리인이 특허법인 또는 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법인등록] 시 사용한 것과 같은 서명 또는 인감을 사용하며, 특허고객번호 정보변경(경정), 정정신고서에 따라 서명 또는 인감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서명 또는 인감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비밀디자인청구서

(앞쪽)

**【출원인】**

**【성명(명칭)】**

**【특허고객번호】**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번호】**

( **【포괄위임등록번호】** )

**【사건의 표시】**

**【출원번호】**

**【디자인의 일련번호】**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디자인비밀보장청구】**

**【청구기간】**

위와 같이 특허청장에게 제출합니다.

출원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수수료】**            개 디자인            원 (기재방법 제5호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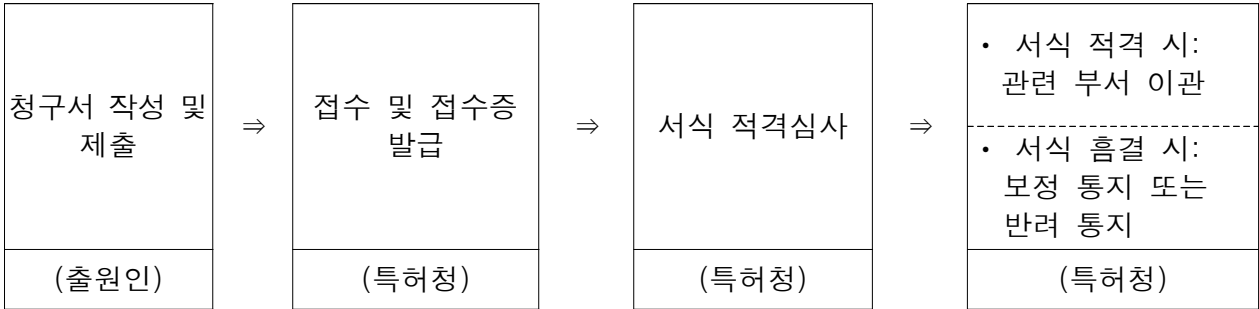
( **【수수료 자동납부번호】** )

**【첨부서류】** 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 (기재방법 제7호 참조)

### 1. 서식의 용도 및 관련 규정

이 서식은 출원인이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일부터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디자인을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하려는 경우에 제출합니다(관련 규정: 「디자인보호법」 제43조).

### 2. 서식의 제출 및 처리절차



## ※ 기재방법

### 1. 【출원인】란

가. 특허고객번호가 있는 경우

- 1) 【성명(명칭)】란에는 특허고객번호부여신청서에 적은 한글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습니다.
- 2) 제출인이 「디자인보호법」 제179조에 따른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이하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이라 한다) 출원인인 경우에는 【성명(명칭)】란에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 협정」 제1조(viii)에 따른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것과 같은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습니다.
- 3) 제출인이 국제디자인등록출원과 관련된 심판사건의 제출인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성명(명칭)】란은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외래어표기법에 따라 한글로 음역하여 성과 이름 사이에 한 칸 띄어쓰기하여 적고, 【성명(명칭)】란의 다음 줄에 【성명(명칭)의 영문 표기】란을 만들어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 협정」 제1조(viii)에 따른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것과 같은 문자로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습니다.

[예] 【제출인】

【성명(명칭)】 케네디 존 에프

【성명(명칭)의 영문 표기】 KENNEDY John F.

【특허고객번호】 0-0000-000000-0

- 4) 【특허고객번호】란에는 특허청에서 부여한 특허고객번호를 적습니다.

나.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

- 1) 【출원인】란의 다음 행에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특허고객번호부여신청서)의 기재요령 제1호를 참조하여 제출인의 【성명(명칭)의 국문표기】 및 【성명(명칭)의 영문표기】 등 필요한 난을 만들어 적습니다.
- 2) 출원인은 직접 서명하거나 인감을 날인해야 하며, 그 방법은 원칙적으로 【첨부서류】란이 있는 쪽의 다음 쪽에 【출원인 ○○○의 인감(서명)】란을 만들고 그 아래에 가로 4cm × 세로 4cm의 인감 날인란(서명란)을 만들어 직접 서명하거나 출원인의 인감을 선명하게

날인합니다. 2인 이상의 출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출원인의 수대로 **【출원인 ○○○의 인감(서명)】**란을 만들어 모든 출원인이 직접 서명하거나 인감을 날인합니다.

다. 공통

- 1) **【사건과의 관계】**란은 “출원인”, “등록권리자”, “제3자”, “청구인”, “피청구인”, “이의신청인” 등과 같이 제출인과 사건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적습니다.
- 2) ~~변리사 또는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 외의 임의대리인에 의하여 출원하거나~~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출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출원인】**란의 다음 줄에 **【법정대리인-등】**란을 만들어 법정대리인-등의 **【성명】** 및 **【특허고객번호】**를 적고,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예] **【출원인】**

**【법정대리인-등】**

**【성명】**

**【특허고객번호】**

2. **【대리인】**란

가.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리인번호를 적습니다. 대리인이 특허법인 또는 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대리인번호】**란의 다음 줄에 **【지정된 변리사】**란을 만들어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모두 적습니다.

[예] **【대리인】**

**【성명(명칭)】** 특허법인 ○○○○

**【대리인번호】** (특허법인의 대리인번호)

**【지정된 변리사】** 변리사 ○○○, 변리사 ○○○

나. 포괄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대리인번호】**란의 다음 줄에 **【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포괄위임등록번호를 적고, 대리인이 2인 이상의 위임자와 포괄위임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위임자의 수대로 **【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모두 적습니다.

[예]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다.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이 위임자 모두를 대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대리인번호】**란의 다음 줄에 **【특기사항】**란을 만들어 적습니다.

[예] **【대리인번호】**

**【특기사항】** 제출인 ○○○의 대리인

라.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인 경우 **【첨부서류】**란에 “위임장”이라 적고, 위임장을 이 서식에 첨부하며, 위임장의 기재사항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위임장)을 참조하여 작성합니다.

### 3. 【사건의 표시】란

가. 【출원번호】란에는 해당 건의 출원번호(예: 30-2014-1234567)를 적습니다.

나. 【디자인의 일련번호】란은 복수디자인등록출원(2014년 7월 1일 이후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것만 해당합니다)된 디자인 중 일부 디자인에 대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다음 예와 같이 적습니다.

[예] 【사건의 표시】

【출원번호】 30-2014-1234567

【디자인의 일련번호】 M002, M005, M009

다.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란에는 출원서의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란에 적힌 것과 동일하게 적습니다. 다만, 복수디자인등록출원(2014년 7월 1일 이후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것만 해당합니다)된 디자인 중 전부 또는 일부 디자인에 대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그 중 가장 앞선 일련번호 디자인의 물품명을 적습니다.

[예] 【사건의 표시】

【출원번호】 30-2014-1234567

【디자인의 일련번호】 M002, M005, M009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신사복 등

### 4. 【디자인비밀보장청구】란

디자인비밀보장 청구기간을 【청구기간】란에 적고, 청구기간은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일로부터 3년(36개월) 이내의 기간으로 정하되, 그 연수와 월을 “등록일로부터 ○○개월”의 형태로 적습니다.

### 5. 【수수료】란

【수수료】란은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4조제1항을 참조하여 비밀보장을 청구하는 디자인의 개수 및 디자인비밀보장의 청구료 금액을 적습니다.

### 6. 【수수료 자동납부번호】란

사전에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수수료 자동납부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해당 절차의 수수료를 자동납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서식을 서면 대신 전자문서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수수료 자동납부신청서에 적은 계좌번호를 해당 서식의 【수수료 자동납부번호】란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 7. 【첨부서류】란

가. 서식에 첨부할 서류명과 부수를 다음 예와 같이 적되, 서식과 함께 제출하지 않는 첨부서류는 적을 수 없습니다.

[예] 【첨부서류】 위임장 1통

나. 첨부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42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라 누구든지 서류로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에 해당하는 서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특허청장이 확인해야 하는 정보로서, 출원인은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서류의 명칭, 부수 및 그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적습니다.

[예]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통 [상호: ○○○, 법인등록번호: 000000-0000000]

다. 첨부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42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라 누구든지 서류로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 외의 행정정보(주민등록표 등본·초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에 해당하는 서류는 출원인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특허청장이 확인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따라서 특허청장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고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서류의 명칭, 부수 및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적으면 관련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허청장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면 출원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예 1]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1통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예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예 3]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1통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보훈번호: 000-0000000]

#### 라. 서류의 원용

1) 동시에 진행하는 둘 이상의 디자인에 관한 절차에서 제출하는 증명서(「디자인보호법」 제8조, 제36조제2항, 제51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명서만 해당합니다)가 같은 것일 경우에는 그 중 한 건에만 증명서의 원본을 제출하고, 다른 건에는 다음 예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적고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 위임장 1통 [같은 날짜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 디자인등록출원서

【출원번호】 30-2010-1234567

2) 이미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한 증명서(「디자인보호법」 제8조, 제36조제2항, 제51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명서만 해당합니다)와 같은 내용의 증명서를 다시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적고 그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 위임장 1통 [아래의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 심판청구서

【심판번호】 2010-당-123456

#### 마. 첨부서류를 전자적 이미지파일 형식으로 변환(스캐닝)하여 제출하는 경우 유의사항

1) 첨부서류로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파일 형식은 해상도 300dpi부터 400dpi까지(300dpi 권장)의 흑백 TIFF(Tagged Image File Format)파일이어야 합니다.

2)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흑백 또는 컬러 이미지로 제출 가능하며,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파일 형식은 해상도 300dpi부터 400dpi까지(300dpi 권장)의 JPEG(Joint Photographic Experts Group)파일이어야 합니다.

#### 바. 첨부서류를 PDF(Portable Document Format)파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8. 작성 시 유의사항

서식은 출원인(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기명을 한 후에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하며, 2인 이상의 출원인(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 기명을 한 후에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합니다. 서명 또는 날인 시의 인감은 출원인등록[대리인이 변리사인 경우에는 변리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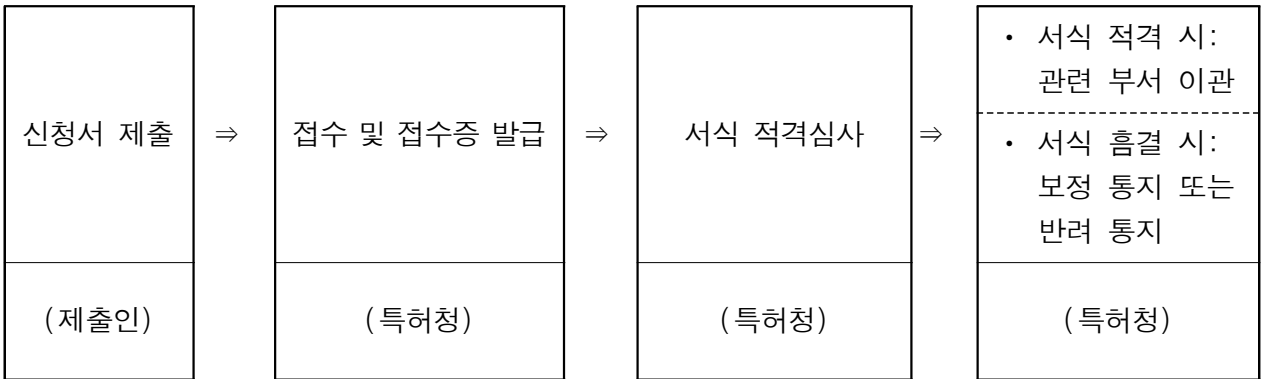
등록, 대리인이 특허법인 또는 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법인등록] 시 사용한 것과 같은 서명 또는 인감을 사용하며, 특허고객번호 정보변경(경정), 정정신고서에 따라 서명 또는 인감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서명 또는 인감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1. 서식의 용도 및 관련 규정

신청 구분	내용	관련 규정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누구든지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출원에 의한 디자인권의 설정 등록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디자인보호법」 제68조
정당한 권리자의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정당한 권리자가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에 의한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디자인보호법」 제45조 및 제68조

2. 처리절차



※ 기재방법

1. 【신청 구분】란

신청구분 중 하나를 선택하여  안에 표시(예: )합니다.

2. 【이의신청인】란

가. 특허고객번호가 있는 경우

1) 【성명(명칭)】란에는 특허고객번호부여신청서에 적은 한글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습니다.

2) 제출인이 「디자인보호법」 제179조에 따른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이하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이라 한다) 출원인인 경우에는 【성명(명칭)】란에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 협정」 제1조(viii)에 따른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것과 같은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습니다.

3) 제출인이 국제디자인등록출원과 관련된 심판사건의 제출인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성명(명칭)】란은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외래어표기법에 따라 한글로 음역하여 성과 이름 사이에 한 칸 띄어쓰기하여 적고, 【성명(명칭)】란의 다음 줄에 【성명(명칭)의 영문 표기】란을 만들어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 협정」 제1조(viii)에 따른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것과 같은 문자로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습니다.

[예] 【제출인】

【성명(명칭)】 케네디 존 에프



【성명(명칭)의 영문 표기】 KENNEDY John F.

【특허고객번호】 0-0000-000000-0

4) 【특허고객번호】 란에는 특허청에서 부여한 특허고객번호를 적습니다.

나.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

1) 【이의신청인】 란에 이의신청인의 【성명(명칭)의 국문표기】 , 【성명(명칭)의 영문표기】 ,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이의신청인 구분】 , 【전화번호】 , 【우편번호】 , 【주소】 , ( 【전자우편주소】 ) 및 ( 【휴대전화번호】 )란을 각각 만들어 적습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인 구분】 란에는 “국가기관”, “국내 법인”, “국내 자연인”, “외국 법인”, “외국 자연인” 중에서 가장 적합한 구분을 한 가지만 선택하여 적습니다.

2) 【이의신청인】 란의 구체적인 기재사항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특허고객번호부여신청서)의 기재요령 제1호를 참조하여 작성합니다.

3) 이의신청인은 직접 서명하거나 인감을 날인해야 하며, 그 방법은 원칙적으로 【첨부서류】 란이 있는 쪽의 다음 쪽에 【이의신청인 ○○○의 인감(서명)】 란을 만들고 그 아래에 가로 4cm × 세로 4cm의 인감 날인란(서명란)을 만들어 직접 서명하거나 이의신청인의 인감을 선명하게 날인합니다. 2인 이상의 이의신청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인의 수대로 【이의신청인 ○○○의 인감(서명)】 란을 만들어 모든 이의신청인이 직접 서명하거나 인감을 날인합니다.

다. 공통

~~변리사 또는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 외의 임의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거나 미성년자, 피 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이의신청인】 란의 다음 줄에 【법정대리인-등】 란을 만들어 법정대리인-등의 【성명】 및 【특허고객번호】 를 적고,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예] 【이의신청인】

【법정대리인-등】

【성명】

【특허고객번호】

3. 【대리인】 란

가.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리인번호를 적습니다. 대리인이 특허법인 또는 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대리인번호】 란의 다음 줄에 【지정된 변리사】 란을 만들어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모두 적습니다.

[예] 【대리인】

【성명(명칭)】 특허법인 ○○○○

【대리인번호】 (특허법인의 대리인번호)

【지정된 변리사】 변리사 ○○○, 변리사 ○○○

나. 포괄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대리인번호】 란의 다음 줄에 【포괄위임등록번호】 란을 만들어 포괄위임등록번호를 적고, 대리인이 2인 이상의 위임자와 포괄위임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위임자의 수대로 【포괄위임등록번호】 란을 만들어 모두 적습니다.

[예]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다.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이 위임자 모두를 대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대리인번호】란의 다음 줄에 【특기사항】란을 만들어 적습니다.

[예] 【대리인번호】

【특기사항】 이의신청인 ○○○의 대리인

라.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인 경우 【첨부서류】란에 “위임장”이라 적고, 위임장을 이 서식에 첨부하며, 위임장의 기재사항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위임장)을 참고하여 작성합니다.

4. 【사건의 표시】란

【디자인등록번호】 , 【등록일】란,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란에 해당하는 내용을 각각 적습니다.

5. 【신청이유】란

이 난에는 “별지와 같음”이라 적고, 별지에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정당한 권리자의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의 경우에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인이 디자인 창작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이유 등을 적습니다.

6. 【증거방법】란

이 난은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적고 필요에 따라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의 이유 또는 증거는 이의신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정할 수 있습니다.

7. 【수수료】란

이 난에는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4조제1항을 참조하여 이의신청 시에 납부하는 수수료의 금액을 적습니다.

8. 【수수료 자동납부번호】란

사전에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수수료 자동납부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해당 절차의 수수료를 자동납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서식을 서면 대신 전자문서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수수료 자동납부신청서에 적은 계좌번호를 해당 서식의 【수수료 자동납부번호】란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9. 【첨부서류】란

가. 서식에 첨부할 서류명과 부수를 다음 예와 같이 적되, 서식과 함께 제출하지 않는 첨부서류는 적을 수 없습니다.

[예] 【첨부서류】 위임장 1통

나. 첨부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42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라 누구든지 서류로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에 해당하는 서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특허청장이 확인해야 하는 정보로서, 제출인은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서류의 명칭, 부수 및 그 서류

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적습니다.

[예]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통

[상호: ○○○, 법인등록번호: 000000-0000000]

다. 첨부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42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라 누구든지 서류로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 외의 행정정보(주민등록표 등본·초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인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특허청장이 확인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따라서 특허청장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고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서류의 명칭, 부수 및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적으면 관련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허청장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면 제출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예 1]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1통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예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예 3]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1통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보훈번호: 000-000000]

라. 서류의 원용

1) 동시에 진행하는 둘 이상의 디자인에 관한 절차에서 제출하는 증명서(「디자인보호법」 제8조, 제36조제2항, 제51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명서만 해당합니다)가 같은 것일 경우에는 그 중 한 건에만 증명서의 원본을 제출하고, 다른 건에는 다음 예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적고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 위임장 1통 [같은 날짜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 디자인등록출원서

【출원번호】 30-2010-1234567

2) 이미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한 증명서(「디자인보호법」 제8조, 제36조제2항, 제51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명서만 해당합니다)와 같은 내용의 증명서를 다시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적고 그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 위임장 1통 [아래의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 심판청구서

【심판번호】 2010-당-123456

마. 첨부서류를 전자적 이미지파일 형식으로 변환(스캐닝)하여 제출하는 경우 유의사항

1) 첨부서류로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파일 형식은 해상도 300dpi부터 400dpi까지(300dpi 권장)의 흑백 TIFF(Tagged Image File Format)파일이어야 합니다.

2)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흑백 또는 컬러 이미지로 제출 가능하며,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

지파일 형식은 해상도 300dpi부터 400dpi까지(300dpi 권장)의 JPEG(Joint Photographic Experts Group)파일이어야 합니다.

바. 첨부서류를 PDF(Portable Document Format)파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 도면을 3차원 모델링(Modeling)파일로 제출할 경우에는 3DS(3D Studio), DWG(Drawing), DWF(Design Web Format), IGES(Initial Graphic Exchange Specification) 또는 3DM(3 Dimensional Modeling) 파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복수로 제출할 경우에는 모든 디자인을 3차원 모델링파일 형식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10. 작성 시 유의사항

서식은 제출인(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기명을 한 후에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하며, 2인 이상의 제출인(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 기명을 한 후에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합니다. 서명 또는 날인 시의 인감은 출원인등록[대리인이 변리사인 경우에는 변리사등록, 대리인이 특허법인 또는 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법인등록] 시 사용한 것과 같은 서명 또는 인감을 사용하며, 특허고객번호 정보변경(경정), 정정신고서에 따라 서명 또는 인감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서명 또는 인감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디자인등록증

CERTIFICATE OF DESIGN REGISTRATION

등록제	호	출원번호(국제등록번호)	제	호
(REGISTRATION NUMBER)		(APPLICATION NUMBER)		
	출원일	년	월	일
	(FILING DATE: YY/MM/DD)			
	등록일	년	월	일
	(REGISTRATION DATE: YY/MM/DD)			
	등록의 구분		심사등록	
	(TYPE OF REGISTRATION)		(EXAMINED REGISTRATION)	

물품류(CLASS)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PRODUCT)

디자인권자(OWNER)

창작자(CREATOR)

위의 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디자인등록원부에 등록되었음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THE DESIGN IS REGISTERED ON THE REGISTER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년 월 일

**특허청장**

**COMMISSIONER,**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서명

# 디자인등록증

CERTIFICATE OF DESIGN REGISTRATION

등록제 호 출원번호(국제등록번호) 제 호  
(REGISTRATION NUMBER) (APPLICATION NUMBER)  
출원일 년 월 일  
(FILING DATE: YY/MM/DD)  
등록일 년 월 일  
(REGISTRATION DATE: YY/MM/DD)  
등록의 구분 일부심사등록  
(TYPE OF REGISTRATION) (PARTIALLY EXAMINED REGISTRATION)

물품류(CLASS)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PRODUCT)

디자인권자(OWNER)

창작자(CREATOR)

위의 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디자인등록원부에 등록되었음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THE DESIGN IS REGISTERED ON THE REGISTER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년 월 일

**특허청장**

**COMMISSIONER,**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서명

이 디자인권은 「디자인보호법」 제33조(신규성 등) 및 제46조(선출원) 등의 등록요건에 대한 심사를 하지 않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 권리입니다.

# 관련디자인등록증

## CERTIFICATE OF RELATED DESIGN REGISTRATION

등록제 (REGISTRATION NUMBER)	호	출원번호(국제등록번호) (APPLICATION NUMBER)	제	호
		출원일 (FILING DATE: YY/MM/DD)	년	월 일
		등록일 (REGISTRATION DATE: YY/MM/DD)	년	월 일
		등록의 구분 (TYPE OF REGISTRATION)	심사등록 (EXAMINED REGISTRATION)	
		기본디자인 (PRINCIPAL DESIGN)	등록제 (REGISTRATION NUMBER)	호

물품류(CLASS)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PRODUCT)

디자인권자(OWNER)

창작자(CREATOR)

위의 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디자인등록원부에 등록되었음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THE DESIGN IS REGISTERED ON THE REGISTER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년 월 일

**특허청장**

**COMMISSIONER,**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서명

# 관련디자인등록증

CERTIFICATE OF RELATED DESIGN REGISTRATION

등록제 (REGISTRATION NUMBER)	호	출원번호(국제등록번호) (APPLICATION NUMBER)	제	호
	출원일 (FILING DATE: YY/MM/DD)	년	월	일
	등록일 (REGISTRATION DATE: YY/MM/DD)	년	월	일
	등록의 구분 (TYPE OF REGISTRATION)	일부심사등록 (PARTIALLY EXAMINED REGISTRATION)		
	기본디자인 (PRINCIPAL DESIGN)	등록제	호	
		(REGISTRATION NUMBER)		

물품류(CLASS)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PRODUCT)

디자인권자(OWNER)

창작자(CREATOR)

위의 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디자인등록원부에 등록되었음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THE DESIGN IS REGISTERED ON THE REGISTER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년 월 일

**특허청장**

**COMMISSIONER,**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서명

이 디자인권은 「디자인보호법」 제33조(신규성 등) 및 제46조(선출원) 등의 등록요건에 대한 심사를 하지 않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 권리입니다.



# CERTIFICATE OF DESIGN REGISTRATION

REGISTRATION NUMBER    APPLICATION NUMBER  
(INTERNATIONAL  
REGISTRATION NUMBER)  
FILING DATE  
REGISTRATION DATE  
TYPE OF REGISTRATION    EXAMINED REGISTRATION

CLASS

PRODUCT

OWNER

CREATOR

THIS IS TO CERTIFY THAT THE DESIGN IS REGISTERED ON THE REGISTER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COMMISSIONER,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서 명



# CERTIFICATE OF RELATED DESIGN REGISTRATION

REGISTRATION NUMBER    APPLICATION NUMBER  
(INTERNATIONAL  
REGISTRATION NUMBER)  
FILING DATE  
REGISTRATION DATE  
TYPE OF REGISTRATION    EXAMINED REGISTRATION  
PRINCIPAL DESIGN

CLASS

PRODUCT

OWNER

CREATOR

THIS IS TO CERTIFY THAT THE DESIGN IS REGISTERED ON THE REGISTER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COMMISSIONER,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서 명

# CERTIFICATE OF RELATED DESIGN REGISTRATION

REGISTRATION NUMBER    APPLICATION NUMBER  
(INTERNATIONAL  
REGISTRATION NUMBER)  
FILING DATE  
REGISTRATION DATE  
TYPE OF REGISTRATION    PARTIALLY EXAMINED  
REGISTRATION  
PRINCIPAL DESIGN

CLASS

PRODUCT

OWNER

CREATOR

THIS IS TO CERTIFY THAT THE DESIGN IS REGISTERED ON THE REGISTER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COMMISSIONER,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서 명

This design right was granted design registration after partial examination; thus, examination was not conducted on the requirements for novelty and the first-to-file rule, set out in Article 33 and Article 46 under the Industrial Design Protection Act.

## 디자인등록증

CERTIFICATE OF DESIGN REGISTRATION

등록 제 호 출원번호(국제등록번호) 제 호  
(REGISTRATION NUMBER) (APPLICATION NUMBER)  
출원 일 년 월 일  
(FILING DATE: YY/MM/DD)  
등록 일 년 월 일  
(REGISTRATION DATE: YY/MM/DD)  
등록의 구분 심사등록  
(TYPE OF REGISTRATION) (EXAMINED REGISTRATION)

물품류(CLASS)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PRODUCT)

디자인권자(OWNER)

창작자(CREATOR)

위의 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디자인등록원부에 등록되었음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THE DESIGN IS REGISTERED ON THE REGISTER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년 월 일

특허청장

COMMISSIONER,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서명

등록사항

210mm×148mm(백상지 80g/m<sup>2</sup>)

## 디자인등록증

CERTIFICATE OF DESIGN REGISTRATION

등록 제 호 출원번호(국제등록번호) 제 호

(APPLICATION NUMBER)

(REGISTRATION NUMBER) 출원일 년 월 일

(FILING DATE: YY/MM/DD)

등록일 년 월 일

(REGISTRATION DATE: YY/MM/DD)

등록의 구분 일부심사등록

(TYPE OF REGISTRATION) (PARTIALLY EXAMINED REGISTRATION)

물품류(CLASS)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PRODUCT)

디자인권자(OWNER)

창작자(CREATOR)

위의 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디자인등록원부에 등록되었음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THE DESIGN IS REGISTERED ON THE REGISTER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년 월 일

특허청장

COMMISSIONER,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서명

이 디자인권은 「디자인보호법」 제33조(신규성 등) 및 제46조(선출원) 등의 등록요건에 대한 심사를 하지 않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 권리입니다.

등록사항

210mm×148mm(백상지 80g/m<sup>2</sup>)

<b>관련디자인등록증</b> CERTIFICATE OF RELATED DESIGN REGISTRATION		등록사항
등록제호 (REGISTRATION NUMBER)	출원번호(국제등록번호) 제호 (APPLICATION NUMBER) 출원일 년 월 일 (FILING DATE: YY/MM/DD) 등록일 년 월 일 (REGISTRATION DATE: YY/MM/DD) 등록의 구분 심사등록 (TYPE OF REGISTRATION) (EXAMINED REGISTRATION) 기본디자인 등록제호 (PRINCIPAL DESIGN) (REGISTRATION NUMBER)	
물품류(CLASS)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PRODUCT)		
디자인권자(OWNER)		
창작자(CREATOR)		
위의 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디자인등록원부에 등록되었음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THE DESIGN IS REGISTERED ON THE REGISTER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년 월 일		
<b>특허청장</b> <b>COMMISSIONER,</b> <b>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b>		
<div style="border: 1px solid orange;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서명</div>		

210mm×148mm(백상지 80g/㎡)





<b>CERTIFICATE OF DESIGN REGISTRATION</b>		<b>REGISTRATION DETAILS</b>	
REGISTRATION NUMBER	APPLICATION NUMBER		
	FILING DATE		
	REGISTRATION DATE		
	TYPE OF REGISTRATION		EXAMINED REGISTRATION
CLASS			
PRODUCT			
OWNER			
CREATOR			
THIS IS TO CERTIFY THAT THE DESIGN IS REGISTERED ON THE REGISTER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b>COMMISSIONER,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b>			
<div style="border: 2px solid orange;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서 명</div>			

210mm×148mm(백상지 80g/㎡)

CERTIFICATE OF DESIGN REGISTRATION	REGISTRATION DETAILS
REGISTRATION NUMBER APPLICATION NUMBER FILING DATE REGISTRATION DATE TYPE OF REGISTRATION PARTIALLY EXAMINED REGISTRATION  CLASS  PRODUCT  OWNER  CREATOR	
THIS IS TO CERTIFY THAT THE DESIGN IS REGISTERED ON THE REGISTER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b>COMMISSIONER,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b>	
<b>서 명</b>	
<small>This design right was granted design registration after partial examination; thus, examination was not conducted on the requirements for novelty and the first-to-file rule, set out in Article 33 and Article 46 under the Industrial Design Protection Act.</small>	

210mm×148mm(백상지 80g/㎡)

CERTIFICATE OF RELATED DESIGN REGISTRATION	REGISTRATION DETAILS
REGISTRATION NUMBER APPLICATION NUMBER FILING DATE REGISTRATION DATE TYPE OF REGISTRATION EXAMINED REGISTRATION PRINCIPAL DESIGN	
CLASS	
PRODUCT	
OWNER	
CREATOR	
THIS IS TO CERTIFY THAT THE DESIGN IS REGISTERED ON THE REGISTER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b>COMMISSIONER,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b>	
서명	

210mm×148mm(백상지 80g/㎡)



## 국제출원서 등 제출서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 협정」에 따른 국제출원 용도

(앞쪽)

【제출 구분】  국제출원서 등  대체서류  국제출원보정서

【제출인】

【성명(명칭)】

【특허고객번호】

【사건과의 관계】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번호】

( 【포괄위임등록번호】 )

【사건의 표시】

【특허청참조번호】

( 【제출원인이 된 서류의 접수(발송)번호】 )

( 【대체사항(보정사항)】

【대체할(보정할) 서류】

【대체할 페이지(보정대상 항목)】

【보정방법】 )

위와 같이 특허청장에게 제출합니다.

제출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수수료】 원 (기재방법 제7호 참조)

【수수료 자동납부번호】

【첨부서류】 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 (기재방법 제9호 참조)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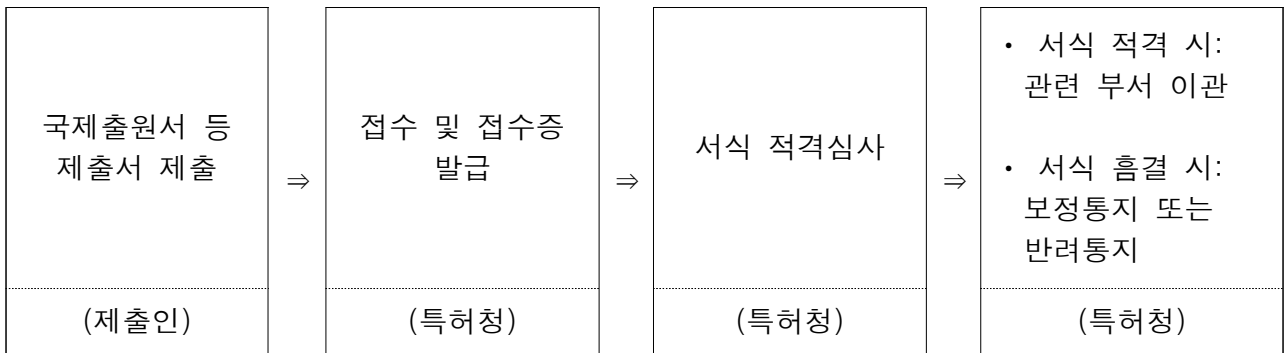
### 1. 제출 구분 및 관련 규정

이 서식은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 협정」에 따른 국제출원에 관한 절차를

받는 자가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기 위하여 사용합니다.

제출 구분	내용	관련 규정
국제출원서 등	국제출원서 또는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 협정」의 특정 계약당사자가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90조
대체서류	국제출원서류에 대한 대체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91조
국제출원보정서	국제출원서류에 대한 보정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92조

## 2. 처리절차



### ※ 기재방법

#### 1. 【제출 구분】란

제출사항 중 하나를 선택하여  안에 표시(예: )합니다.

#### 2. 【제출인】란

가. 특허고객번호가 있는 경우

【성명(명칭)】란에는 특허고객번호 부여신청 시 적은 영문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습니다.

나.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

1) 【제출인】란의 다음 행에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특허고객번호부여신청서)의 기재요령 제1호를 참조하여 제출인의 【성명(명칭)의 국문표기】 및 【성명(명칭)의 영문표기】 등 필요한 난을 만들어 적습니다.

2) 제출인은 직접 서명하거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며, 그 방법은 원칙적으로 【첨부서류】란이 있는 쪽의 다음 쪽에 【제출인 ○○○의 인감(서명)】란을 만들고 그 아래 가로 4cm × 세로 4cm의 인감 날인란(서명란)을 만들어 직접 서명하거나 제출인의 인감을 선명하게 날인합니다. 2인 이상의 제출인이 있는 경우에는 제출인의 수만큼 【제출인 ○○○의 인감(서명)】란을 만들어 모든 제출인이 직접 서명하거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다. 공통

- 1) 【사건과의 관계】란에는 “국제출원인” 등과 같이 제출인과 사건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적습니다.
- 2) 변리사, 특허법인 또는 특허법인(유한) 외의 임의대리인이 제출하거나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제출인】란 기재사항의 다음 줄에 【법정대리인-등】란을 만들어 법정대리인-등의 【성명】 및 【특허고객번호】를 적으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이 서식에 첨부합니다.

[예] 【제출인】  
      【법정대리인-등】  
      【성명】  
      【특허고객번호】

3. 【대리인】란

- 가. 대리인이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영문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과 대리인번호를 적고,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대리인이 특허법인 또는 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대리인번호】란 다음 줄에 【지정된 변리사】란을 만들어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모두 적습니다.

[예]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번호】  
      【지정된 변리사】

※ 【지정된 변리사】란에는 대리인 신고 시 적은 영문 성명만을 적으며, 성과 이름 사이에 쉼표는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 【지정된 변리사】 HONG Gil Dong, KANG Gam Chan

- 나. 포괄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대리인번호】란 다음 줄에 【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포괄위임등록번호를 적으며, 대리인이 2인 이상의 위임자와 포괄위임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위임자의 수만큼 【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모두 적습니다.

[예]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 다.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이 위임자 모두를 대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대리인번호】란 다음 줄에 【특기사항】란을 만들어 적습니다.

[예] 【대리인번호】  
      【특기사항】 제출인 ○○○의 대리인

4. 【사건의 표시】란

서식의 대상이 되는 출원의 【특허청참조번호】를 적습니다.

5. 【제출원인이 된 서류의 접수(발송)번호】란

- 가. 특허청장 등의 통지에 의한 보정일 경우에는 제출원인이 된 통지서의 발송번호를 적습니다.
- 나. 통지에 의하지 않고 자진하여 보정하는 경우에는 【제출원인이 된 서류의 접수번호】란에 보정의 대상이 되는 서류의 접수번호를 적습니다.

6. 【대체사항(보정사항)】란

가. 대체서류를 제출하려는 경우 【대체사항】란의 【대체할 서류】란에는 대체하려는 서류명을 적고, 【대체할 페이지】란에는 대체하려는 서류의 페이지 번호를 적으며, 대체하려는 페이지가 둘 이상일 경우에는 쉼표로 구분하여 예와 같이 적습니다. 다만, 전자적으로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대체할 페이지가 포함된 국제출원서 일체를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대체할 페이지】란에는 ‘전체’로 적습니다.

[예] 【대체사항】

【대체할 서류】 국제출원서

【대체할 페이지】 1, 3, 5 (또는 전체)

나. 국제출원보정서를 제출하려는 경우 【보정사항】란에 【보정할 서류】, 【보정대상항목】, 【보정방법】 및 【보정내용】란을 적습니다.

- 1) 【보정할 서류】란에는 보정하려는 서류명을 적습니다.
- 2) 【보정대상 항목】란에는 보정하려는 식별 항목명을 적습니다. 다만, 소항목 단위의 보정이 불가능하므로, 보정하려는 식별 항목이 소항목인 경우에는 그 식별 항목을 포함하고 있는 대항목을 적습니다.
- 3) 【보정방법】란에는 “정정”, “추가”, “제출”, “납부” 등으로 적으며, 둘 이상의 보정방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쉼표로 구분하여 모두 적을 수 있습니다.
- 4) 【보정내용】란에는 보정할 내용을 적되, “정정”, “추가”의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밑줄을 쳐서 보정된 내용임을 표시합니다.

<보정할 사항의 기재 예시>

출원 시 미제출된 위임장을 제출하면서 미납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

【보정사항】

【보정할 서류】

【보정대상 항목】 첨부서류

【보정방법】 제출

【보정내용】

【첨부서류】 위임장 1통

【보정사항】

【보정할 서류】

【보정대상 항목】 수수료



## 【보정방법】 납부

### 7. 【수수료】란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11조를 참조하여 서식 제출 후에 납부할 수수료의 금액을 적습니다.

### 8. 【수수료 자동납부번호】란

사전에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수수료 자동납부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해당 절차의 수수료를 자동납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서식을 서면 대신 전자문서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수수료 자동납부신청서에 적은 계좌번호를 해당 서식의 【수수료 자동납부번호】란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 9. 【첨부서류】란

가. 이 서식에 첨부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국제출원서 1통(국제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
- 2) 영어로 작성된 대체서류 1통(대체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 3) 보정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통(국제출원보정서를 제출하는 경우)

#### 나. 【첨부서류】란의 기재방법

서식에 첨부할 서류명과 부수를 다음 예와 같이 적되, 서식과 함께 제출하지 않는 서류는 적을 수 없습니다.

[예] 【첨부서류】 위임장 1통

다. 첨부서류를 전자적 이미지 파일 형식으로 변환(스캐닝)하여 제출하는 경우의 유의사항

- 1) 첨부서류로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의 형식은 해상도 300dpi부터 400dpi까지(300dpi 권장)의 흑백 TIFF(Tagged Image File Format) 파일이어야 합니다.
- 2)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흑백 또는 컬러 이미지로 제출 가능하며,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 파일 형식은 해상도 300dpi부터 400dpi까지(300dpi 권장)의 JPEG(Joint Photographic Experts Group) 파일이어야 합니다.

라. 첨부서류를 PDF(Portable Document Format) 파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국제출원 취하서

(앞쪽)

**【출원인】**

【성명(명칭)】

【특허고객번호】

【사건과의 관계】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번호】

( 【포괄위임등록번호】 )

**【사건의 표시】**

【특허청참조번호】

**【취하대상의 표시】**

【서류명】

( 【취하요지】 )

위와 같이 특허청장에게 제출합니다.

제출인(대리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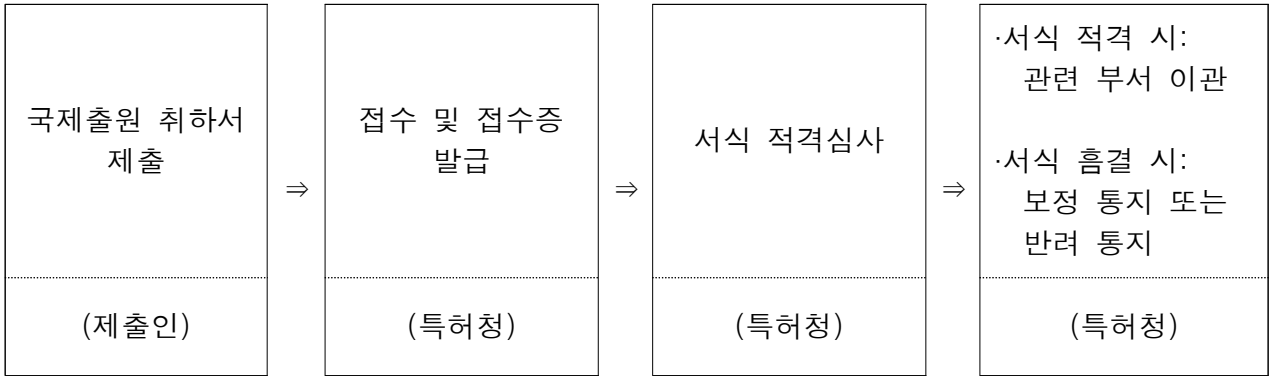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 (기재방법 제5호 참조)

1. 서식의 용도 및 관련 규정

이 서식은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 협정」에 따른 국제출원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국제출원을 취하하기 위하여 제출합니다(관련 규정: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93조).

2. 처리절차



※ 기재방법

1. 【출원인】란

가. 특허고객번호가 있는 경우

【성명(명칭)】란에는 특허고객번호 부여신청 시 적은 영문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습니다.

나.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

1) 【출원인】란의 다음 행에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특허고객번호 부여신청서)의 기재요령 제1호를 참조하여 제출인의 【성명(명칭)의 국문표기】 및 【성명(명칭)의 영문표기】 등 필요한 난을 만들어 적습니다.

2) 제출인은 직접 서명하거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며, 그 방법은 원칙적으로 【첨부서류】란이 있는 쪽의 다음 쪽에 【제출인 ○○○의 인감(서명)】란을 만들고 그 아래가로 4cm × 세로 4cm의 인감 날인란(서명란)을 만들어 직접 서명하거나 제출인의 인감을 선명하게 날인합니다. 2인 이상의 제출인이 있는 경우에는 제출인의 수만큼 【제출인 ○○○의 인감(서명)】란을 만들어 모든 제출인이 직접 서명하거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다. 공통

1) 【사건과의 관계】란에는 "국제출원인" 등과 같이 제출인과 사건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적습니다.

2) ~~변리사, 특허법인 또는 특허법인(유한) 외의 임의대리인이 제출하거나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출원인】란 기재사항의 다음 줄에 【법정대리인-등】란을 만들어 법정대리인-등의 【성명】 및 【특허고객번호】를 적으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이 서식에 첨부합니다.~~

[예] 【출원인】

【~~법정대리인~~등】

【성명】

【특허고객번호】

## 2. 【대리인】란

가. 대리인이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영문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과 대리인번호를 적고,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대리인이 특허법인 또는 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대리인번호】란 다음 줄에 【지정된 변리사】란을 만들어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모두 적습니다.

[예]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번호】

【지정된 변리사】

※ 【지정된 변리사】란에는 대리인 신고 시 적은 영문 성명만을 적으며, 성과 이름 사이에 쉼표는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 【지정된 변리사】 HONG Gil Dong, KANG Gam Chan

나. 포괄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대리인번호】란 다음 줄에 【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포괄위임등록번호를 적으며, 대리인이 2인 이상의 위임자와 포괄위임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위임자의 수만큼 【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모두 적습니다.

[예]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다.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이 위임자 모두를 대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대리인번호】란 다음 줄에 【특기사항】란을 만들어 적습니다.

[예] 【대리인번호】

【특기사항】 출원인 ○○○의 대리인

## 3. 【사건의 표시】란

서식의 대상이 되는 출원의 【특허청참조번호】를 적습니다.

## 4. 【취하대상의 표시】란

【서류명】, 【접수번호】, 【제출일】 및 【취하요지】란에는 각각 취하대상이 된 서류명과 이를 제출하고 받은 접수번호, 서류 제출일 및 취하요지를 간략하게 적으며, 【서류명】란에는 국제출원서만 적을 수 있습니다.

## 5. 【첨부서류】란

이 서식에는 기재방법 제3호 또는 제4호를 참조하여 필요한 서류를 첨부합니다. 이 경우 【첨부서류】란에는 서식에 첨부된 서류명과 부수를 적습니다.

## 6. 일반적 유의사항

서식은 제출인(대리인이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기명을 한 후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하며, 2인 이상의 제출인(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 기명을 한 후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합니다. 서명 또는 날인 시의 인감은 출원인등록[대리인이 변리사인 경우 변리사등록, 대리인이 특허법인 또는 특허법인(유한)인 경우 법인등록] 시 사용한 것과 같은 서명이나 인감을 사용하여야 하며, 특허고객번호 정보변경(경정) 신고서에 따라 서명 또는 인감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서명 또는 인감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대리인의 선임 등) ① (생략)</p> <p>②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대리인을 선임하여 그 절차를 밟으려는 경우에는 대리인 선임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대리인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절차를 밟기 위하여 해당 서류에 위임장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대리인 선임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1. (생략)</p> <p>2. 법 제179조에 따른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이하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의견제출, <u>보정 또는 지정기간 연장신청을 하는 경우</u>: 최초로 제출하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서, 별지 제2호서식의 <u>보정서 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의 기간 연장신청서</u></p> <p>③ ~ ⑨ (생략)</p>	<p>제7조(대리인의 선임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 ----- ----- ----- -----.</p> <p>1. (현행과 같음)</p> <p>2. ----- ----- ----- ----- <u>보정, 지정기간연장신청, 우선권증명서류, 우선권증명서류번역문 또는 신규성상실의 예외적용대상 증명서류를 제출하는</u> ---: ----- <u>보정서, -----연장신청서 또는 같은 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의 서류제출서</u></p> <p>③ ~ ⑨ (현행과 같음)</p>

제14조(특허고객번호의 부여 등)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특허 고객번호의 부여를 신청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단서 신설>

1. ~ 10. (생략)

② ~ ⑧ (생략)

<신설>

제47조(우선권 주장 증명서류의

제14조(특허고객번호의 부여 등)

① -----  
-----  
-----.

다만, 제1호, 제4호, 제6호 및 제8호의 경우 디자인보호법 제179조에 따라 본인의 국제디자인 등록출원 및 등록에 관한 절차를 진행하려는 국제등록명의인에 대해서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 10. (현행과 같음)

② ~ ⑧ (현행과 같음)

제24조의2(출원서류등의 반환) ①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이미 제출되었으나 수리되기 전인 출원서류등 중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의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한 자의 신청이 있으면 그 서류를 반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서류의 반환을 신청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반환신청서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7조(우선권 주장 증명서류의

제출 등) ① (생략)

<신설>

② (생략)

③ 제2항에 따라 한글번역문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그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우선권 주장 증명서류의 내용 중 제35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첨부된 도면의 내용과 동일한 부분은 한글번역을 생략할 수 있다.

<신설>

<신설>

제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5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국가"란 특허청과 외국의 디자인업무를 담당하는 행정기관간에 우선권증명서류를 전자적 매체에 의하여 교환할 수 있는 체제가 구축된 국가로서 특허청장이 고시하는 국가를 말한다.

③ (현행 2항과 같음)

④ 제3항 -----  
-----  
-----하며, 이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의 서류제출서에 따른다. -----  
-----.

⑤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국어번역문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우선권주장을 무효로 할 수 있다.

⑥ 법 제51조제4항제2호에서 "





때에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포기서와 함께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5조(서류의 열람 등) ① 법 제206조에 따른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다만, 신청인이 전보(電報) 또는 구두(전화)를 포함한다)로 서류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이나 복사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발급이나 복사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생략)
2. 심판청구사실증명, 심결확정사실증명 및 심결문송달증명 신청과 외국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하려는 자가 그 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한 파리협약 제4조D(1)에 따른 우선권을 주장하기 위한 증명서의 발급 신청: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의 증명신청서

때에 -----  
-----  
-----.

제95조(서류의 열람 등) ① -----  
-----  
-----  
-----  
-----  
-----  
-----  
-----  
-----.

1. (현행과 같음)
2. -----  
-----  
-----  
-----  
-----  
-----  
-----  
-----  
----- 발급을 신청하거나 그 증명서를 특허청장이 세계지식재산기구에 전자적 매체에 의하여 송달(세계지식재산기구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접근 코드의 부여 신청: -----

② (생략)

-----  
② (현행과 같음)